

〈 두루누리 사회보험 〉

사업장 가입확대 상담 매뉴얼

2025년도 두루누리 지원기준 변경

주요내용

구 분			변경전(2024년)		변경후(2025년)	
소득기준			• 월 270만원 미만		• 월 270만원 미만	
제외기준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지원대상	신규가입자	인정요건	상용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일용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한 것으로 인정 ※ 다만, 지원신청월로부터 직전 3개월 (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날을 포함한다)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22.06.30 이전 신청건까지 적용)				
	지원수준	•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직접지원)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상한액) 연금보험료 지원금 중 최대 165,600원 지원 (기여금 82,800원, 부담금 82,800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초과~270만원 미만: 165,600원 정액 지원				
상한액 적용시점			• '24.12월 지원예정금액까지 기존 지원금 적용('25.1월 징수반영) • '25.1월 지원예정금부터 상한액 적용('25.2월 징수반영)			
기존가입자			•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지원기간			•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시행시기			2024.1.1		20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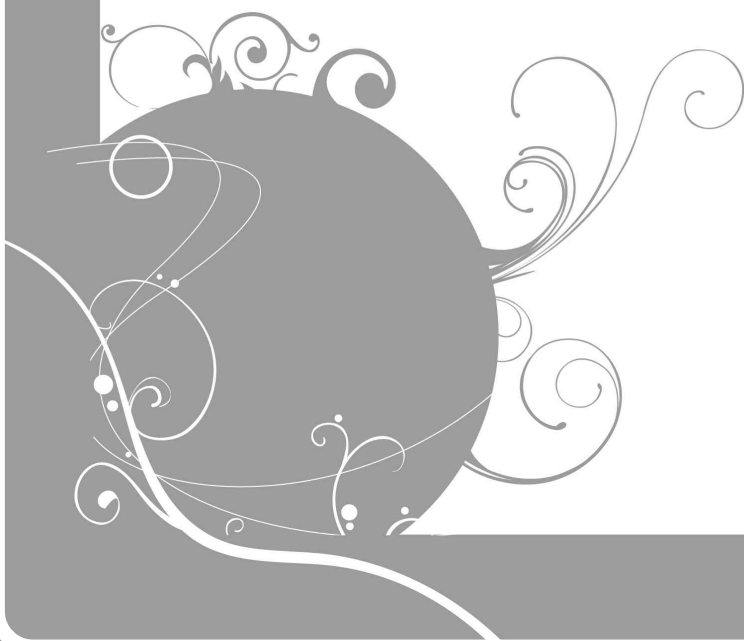
※ 사업규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규모 판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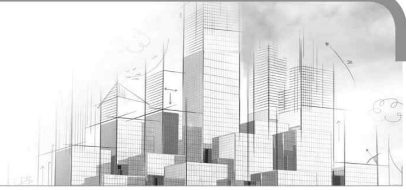
목
차

I. 사회보험제도	1
II.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9
1. 제도개요	11
2. 사회보험료 지원기준(공통)	14
3.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24
4. 피보험자 자격관리 등(고용보험)	28
III. 사회보험 가입확대	37
1. 가입확대사업개요	39
2. 상담 유의사항 및 확인 요령	40
3. 맞춤형 안내 기법	42
4. 사업장 가입 유도	51
<붙임> 1. 신청서식	55
2. 신고서 작성 요령	69
3. 실태조사서(샘플)	73
4. 공공기관목록	74
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제도	88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91
7. 국민연금 관련 Q&A	96
8. 고용·산재보험 관련 Q&A	108
9.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116
10.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117

I . 사회보험제도



I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 정의

1. 사회보험의 의의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활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사회보험으로 기능하고 있다.

강제가입이 필요 이유

- ①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위험이 큰 사람만이 가입하는 역 선택의 문제로 재정 파탄이 우려됨
- ② 보험사가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없음
- ③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 정의를 위한 공동체 합의 필요

2

사회보험 종류 및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전 국민 단일보험 가입,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소득의 누진 역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실업상해질병 등의 위험에 빠졌을 때 전 국민이 연대하여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이다. 철학적으로 집단주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1. 종류 및 현황

국민 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제도를 말한다.
건강 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고용 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만 아니라 구인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이다.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재 보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

2. 4대보험 비교

구 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지역>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단, 27세미만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하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포함)	<건설업 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①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②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업 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별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모든 건설공사(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지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적용제외	일용직	1개월 미만 or 8일 미만 or 220만원 미만	의무가입	1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대상	의무가입	해당없음
당연 적용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65세 이전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사용자 적용여부	근로자와 동일한 가입자로 관리	50인 미만 또는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임의 가입 가능	300명 미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직장가입자로 관리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함
소득 적용기간	당해연도 7월 ~ 다음연도 6월	당해연도 4월 ~ 다음연도 3월	당해연도 4월 ~ 다음연도 3월	당해연도 4월 ~ 다음연도 3월
보험료율	9%	2.05%	매년 업종별로 정함(업종별 보수총액 대비)	7.09%(직장)
보험료부담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지역가입자 : 본인 전액	■사업주 : 1.15% (150인미만) ■근로자 : 0.9%	사업주가 전액 부담(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와 특고자가 2/1씩 부담)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지역가입자 : 본인 전액
납부방법	월납	월납 (건설업은-연납, 분기별 분할납부 가능)	월납 (건설업은-연납, 분기별 분할납부 가능)	월납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 (신고 마감일은 15일)	■건설업은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그 외 사업장은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15일)	■건설업은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 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그 외 사업장은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 마감일은 15일)

구 분	해 택
국민연금	■ 소득재분배 역할로 사회통합 및 세대간 통합에 기여 ⇒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소득대체율이 높도록 설계 ■ 노령 또는 장애·사망으로 소득능력 감소·상실 시 평생 동안 매달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여 반드시 지급 ■ 임금·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지급된 연금급여로서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금함 ⇒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보험 ■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건강보험	■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 책임을 활용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효과를 통해 사회적 연대 강화와 사회통합을 이룸 ■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한 공평한 비용부담과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를 적절한 수준까지 보장 ■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보험급여 제공
고용보험	■ 사용자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인건비, 운영비) ■ 근로자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산재보험	■ 사용자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 <u>미가입사업장에서 산재발생 시 - 사용자는 치료비 및 재활에 따르는 비용의 50%*와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가산금, 과태료 등을 부담</u> * 정수금 상한액 설정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 -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재활급여

구 분	업 무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1577-1000	www.nhis.or.kr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보험 (사업장적용 및 징수, 피보험자 관리제외)	국번없이 1350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부과	1588-0075	www.comwel.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심사평가	1644-2000	www.hira.or.kr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운영	063-711-7800	www.4insure.or.kr

3. 사회보험의 특성

구 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 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수준	위험을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 대상	인보험	인, 물(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Ⅱ.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1

제도 개요



핵심정리

□ 배경 및 목적

- 4대보험의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소규모사업장 가입 확대로 저임금근로자의 권익보호



Q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지원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 수용성이 높은 건강보험과 재해 발생 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산재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예술인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에 관계 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예술인 사업장 사업 규모

- (2022년) 10인 미만 → (2023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및 사업주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 규모 판단 시 예술인의 수는 제외되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미지원 / 예술인은 지원대상

•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세스

구 분	주 체	내 용
안 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해당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월 1회)
신 청	사용자 (근로자)	통합서식 사용하여 2개 공단 중 1개 기관에 신청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통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원결정확인 -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사업장 규모 및 지원 대상 가입근로자 기준소득월액 해당 여부 확인
지원대상 결정 통 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각 공단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결정 - 지원 결정 통보 - 근로자·월별 지원금액 명시 (근로자별 지원내역서 동봉 및 사용자 개별 안내) - 사업장(해당비해당) 결정, 근로자별 지원 내역, 지원 제외 통지서, 신규가입자 지원 결정 내역서 발송
보험료 납부 확 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법정 납부기한 내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 완납이 확인된 경우에 보험료 지원(익월분 보험료에서 공제)
보험료 부과 및 지 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각 공단은 당월분 보험료에서 전월분 지원금을 공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부과내역 송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 ※ 플랫폼의 경우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각 지원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고지서 발송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상 보험료 지원 내역을 표기하여 발송

• 사회보험료 지원 환수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환수결정 및 (고용보험)사전통지	● 부당 지원이 확인되는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 처리 ● 지원금 환수 사전통지 : 의견 10일 이내 제출
환수통지 및 납입고지	● 환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공단본부 일괄 고지 - 납부기한 : 익월 10일 - 납부방법 (국민연금) OCR장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비씨, 국민, 외환, 삼성, 신한, 전북은행비자, 롯데, 현대, 씨티, 하나,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농협, 광주은행), CD/ATM, 일회성 가상계좌(국민은행, 농협), 고정가상계좌(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고용보험) OCR장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우리은행) ※ 일괄 납입고지 처리 이전 고지를 요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 납입고지 처리 가능
독 촉	● 최초 납입고지 납기 경과 후 양 공단 본부에서 독촉고지 - 납부기한 : 익월 10일 ※ 고용보험 환수금의 경우 일괄 독촉처리 이전 독촉을 요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개별 독촉처리 가능
체납처분 승인신청 및 집 행	● 체납처분 승인 신청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및 보건복지부(국민연금)로 체납처분 승인 신청 ● 체납처분 집행 - 체납처분 승인 건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집행(압류 등)
결손처분	● 공단은 체납자의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가능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절차

- ① 사전통지(익월 3일 안내문 발송, 22일까지 의견제출) → ② 환수금 징수결정(익월 23일) → ③ 납입고지(1일, 납부기한: 20일) → ④ 독촉(납기 경과후 다음달 1일, 납부기한: 20일)

2

사회보험료 지원기준(공통)



핵심정리

□ 지원대상

-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가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

* 고시소득 :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1. 사업장 규모 판단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각 보험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한 보험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험만 지원(근로자 수 10명 미만 판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수는 제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 22.3일 :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출처 : 통상 근로계수, 산재보험)

▶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세부 기준(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산정)

- ✓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 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이전으로 소급된 신규 사업장도 동일 기준 적용
-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신청 월 직전 3개월(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고용보험)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면서 지원신청한 경우 성립신고일 기준 10명 미만

2. 지원 제외사업장

-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인사혁신처 고시 2024-10호, '24.12.31.)

※ 대상 사업장은 (붙임 4) 참조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동법 제5장(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

3. 근로자 보수기준

- 월평균 보수가 고시소득 상한액('25년 기준 270만원) 미만인 가입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6호)

● 보험료지원 고시소득 적용기간

- '12.7월 ~ 12월 :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차등구간 105만원)
- '13.1월 ~ 3월 : 130만원 미만(차등구간 110만원, 하한액 폐지)
- '13.4월 ~ 12월 : 130만원 미만(차등구간 폐지)
- '14.1월 ~ 12월 : 135만원 미만
- '15.1월 ~ 12월 : 140만원 미만

- '16.1월 ~'17.12월 : 140만원 미만(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차등지원)
- '18.1월 ~'18.12월 : 190만원 미만(신규가입자 1~4인(5~9인) 90%(80%), 기존가입자 40% 차등지원)
- '19.1월 ~'19.12월 : 21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1~4인(5~9인) 90%(80%), 기존가입자 40% 차등지원)
- '20.1월 ~'20.12월 : 215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1~4인(5~9인) 90%(80%), 기존가입자 30% 지원)
- '21.1월 ~'21.12월 : 22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80%, 기존가입자 지원중단)
- '22.1월 ~'22.12월 : 23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80%, 기존가입자 지원중단)
- '23.1월 ~'23.12월 : 26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80%, 기존가입자 지원중단)
- '24.1월 ~ 현재 :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80%, 기존가입자 지원중단)

Q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 판단 시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 내(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하면서 지원신청한 경우 성립신고일이 기준입니다.

Q '24년도에 지원 중인 사업장은 '25년도에 계속 지원되나요?

A 매년 1월 전년도 지원 기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당해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경우 1.1.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속 지원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번호상 과세구분코드가 '83'이 아닌 경우 공직유관단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란 매 반기마다 인사혁신처 고시로 지정·등록되는 단체이며, 본부에서 반기별로 기관 명칭에 의해 직권 지원제외 처리 후 지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따라 지원제외 됨으로 공공기관 여부 판단 시 인사혁신처 고시에 등록된 기관 명칭과 지정된 기간을 확인하여 환수 및 지원제외 등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Q 00병원입니다. 의사 11명이 공동대표이고, 간호사가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사용자는 제외되므로 공동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6명인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Q 본·지점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건설현장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본지점 근로자 수를 합하여 법인은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등록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며,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법인 번호 없는 단체의 경우 분리적용 본·지점으로 등록되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분리적용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 우리 사업장에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자(휴직자) 2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을 받는 중에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여 10명 이상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 9명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Q (국민연금) 우리 사업장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5명 포함(가입 중)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 되나요?

A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므로 사업장 규모 판단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1명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제조업체인데요, 필리핀 직원 8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A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외국인가입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보험료 지원을 받던 근로자가 퇴사 후, 신규 지원 대상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지원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신청이 유효한 상태에서 동월에 근로자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각 월말 기준 근로자가 연속 3개월 10명 이상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Q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A 지원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지원신청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금보험료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제가 형편이 어려워 3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A (국민연금) '21년 기존가입자 지원중단으로 1년 이내 가입이력 없는 근로자만 신규가입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자로 A사업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중 B사업장에 근무하게 된다면 현재 입사한 B사업장은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신규로 지원받는 A사업장) 있어 기존가입자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이중취득 상태에서는 지원이 제한되며, 취득 우선순위(①월평균보수-②월 소정근로시간-③근로자선택)에 따라 이중취득이 해소된 경우 취득한 사업에서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지원대상이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자 수 10인 미만 판단시점은 언제인가요?

A 자격 마감일까지 신고한 자격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매월 말일 기준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실자는 사업장 규모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당월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예시: '25.3.1. 취득 후 '25.6.30.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6.30. 기준 자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6월 규모판단 시 제외 & 6월 부과금액 있어 지원 대상



핵심정리

- 270만원 미만 근로자 :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일부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80%	'21년부터 지원 중단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자 (상용근로자는 일용이력 제외하고 판단)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지원방법

-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완납 시 익월 보험료에서 공제



'25.3월에 지원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6월인데 소급하여 3월분부터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취득신고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도 소급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 지원율이 궁금합니다.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험료 지원율은 신규가입자만 80%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이력(상용근로자는 일용이력 제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존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중인 사업장과 미신청 사업장의 신규가입자 판단 방법이 다른가요?



네, 판단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원신청 중인 사업장 - 취득신고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취득이력 유무로 판단
- 지원미신청 중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이력 유무로 판단

Q 9. 25. 폐업 예정인 사업장인데요, 9월분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익월(10월) 결정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A사업장에서 2024.2.1. 부로 상실한 근로자가 2024.3.1. 보험료 지원신청 중인 B사업장에 2025.3.1. 월소득 160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신청중인 사업장의 경우 자격취득신고일이 지원신청일이므로 B사업장 취득신고일(2025.3.1.)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가입이력이 없으므로 신규가입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7월에 취득월 미희망으로 입사를 하여 8.15.에 퇴사한 경우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7월분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으며, 8월분은 해당 사업장에서 납기내 완납한 경우 9월분 고지시 9월분 보험료에서 8월분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반드시 완납해야 하나요?

A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단순한 소득 보충이 아닌 '사회보험 가입확대'라는 보험료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성실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핵심정리

■ 사회보험료 지원제외 사유

- 보수변경으로 지원요건의 110%('25년 기준 297만원)을 초과
- 3개월 연속 10명 이상 근로자 고용
 - － 10명 이상 근로자 고용한 4개월째부터 제외
-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 － 직권부과 조사처리 전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항 제2호 ('16.11.30.시행)

구분	지원제외 기준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소득	■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4,3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2호 및 영 제28호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제1항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6호)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



Q 사회보험료 지원제외사유에 해당될 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고당시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중간에 보수가 인상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소득 기준('25년 270만원)의 110%('25년 기준 297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기 지원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되어도 지원하지 않는 사유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 보험료 지원신청 누락 및 보험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보수총액 신고서 (고용보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 중인 근로자가 202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2025년 1월부터 고액소득자(재산)로 지원제외통지를 받았습니다. '24년도 보유 중인 재산을 매각하여 현재는 과세표준이 6억원 미만이라고 주장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21년도부터 중도매각으로 인한 재산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12월에 일괄적으로 공적자료 입수하여 매년 지원제외하고 있어 현재는 지원 불가하며, 재지원은 2025년 재산세 금액이 적용되는 2026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Q 고액소득자(재산)로 제외되었던 분인데 올해에 보험료 지원대상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23년과 '24년 재산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지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고객이 공단에서 입수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핵심정리

□ 환수기준

-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임에도 계속 지원 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 지원금의 환수발생 방지를 위해 자격변동사항(취득,상실) 적기 신고 안내 필요
- 지원대상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다음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지원소득기준 ('25년 270만원)의 110%를 초과('25년 297만원) 하는 경우

□ 환수절차

- 각 공단이 지원금 환수결정·고지·징수 수행



취득시 신고소득이 27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270만원 미만으로 소득 변경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됩니다.



가입자 소급자격변동 처리로 인한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 소급자격변동으로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사유 발생 시 지원 제외일 이후 받은 금액은 환수 결정되며, 이후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말까지 재신청 불가합니다.



10.15 기준 가입자 소득취득으로 신청월(2월)부터 10인 미만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환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월별규모	2월(신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환수발생전	9	8	9	10	10	9	10	9	8



환수발생후	10	9	10	10	10	9	10	9	환수결정
-------	----	---	----	----	----	---	----	---	------

신청월 10인 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 2~8월분 환수결정 및 9월분은 '지원제외'

처리됩니다.

3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핵심정리

■ 자진신고 납부 체계인 건설업 및 별목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별도 마련

* 사후적 신청 →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

가. 지원 대상

(1) 사업 기준

- 건설업·별목업 본사와, 건설공사 및 별목현장을 포함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규모 판단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로 다른 사업과의 일원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2017. 6. 28. 시행)
 - ※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지원제외 기준은 미적용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 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 산정

(2) 근로자 보수 수준

- (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지원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이 해당연도 보수기준의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구 분	2024년	2025년
지원 보수 수준	270만원 미만	270만원 미만

*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국내의 모든 사업의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신고 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미지원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보수 산정 I**

- 보험료지원금 지원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 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

(3)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 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한

구분	지원제한 기준
재산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제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나. 지원 금액 및 방법

(1) 보험료 지원 금액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지원 수준		적용시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보수총액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 지원	2025년
	기가입자	미지원	

※ 고용보험료: 사업주 1.15%(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0.9%), 근로자 0.9% (실업급여)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사업규모 판단: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단

-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업별로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사업주 지원금(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 지원금(실업급여)을 산정한 후 원 단위에서 각각 절사하여 합산

●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기준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자(상용근로자는 일용이력 제외하고 판단)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는 기간 중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직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가입자로 분류
 -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 공백이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 ※ '18.1.1. 이후 근로자 별로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18년 지원대상 월부터 적용)
 - ※ 기가입자 지원은 2020.12.31.까지만 지원('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2) 보험료 지원 방법

●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본사(주된 사업장) 관할 지사에 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신청 해당연도의 국내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완납)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연 1회)

다. 지원절차

(1) 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본사(주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신고·납부한 후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I

- “지원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된 지원 대상 근로자만 기재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기재하지 않음
- 자진신고사업은 월평균보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금 산정을 위해 근로자 인적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등을 기재하도록 함
 - 월평균보수 = (보수총액/해당연도 총 근무일수) × 30일

(2) 지원금 산정 및 지급 방법

● 보험료 납부 확인

- 지원 대상 연도의 국내의 모든 사업의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완납)
- (건설공사 및 별목업) 지원신청 해당 연도의 공사종료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할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완납)

● 보험료 지원금 산정·지급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 결정 후 지원금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신고일부터 지원
- 일용근로자는 법정 신고기간 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3) 보험료 지원금 지급 통보

●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보험료지원신청서에 대해 공단본부에서 결정통지서 DM발송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시 근로자용 통지서가 함께 동봉되므로 사업주는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자용 통지서를 배부

상담 스크립트

고객 건설업과 별목업은 언제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상담 '20.1.9.부터 건설·별목업 등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한이 실제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일과 무관하게 확정보험료 법정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3월 31일(보험연도 중 소멸한 사업의 경우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개정('2019. 시행)
(개정전)확정보험료 신고·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개정후)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 결정 후 지원금 산정하고 사업주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고객 건설업과 별목업은 왜 지원금 지급 방법이 상이한가요?

상답 건설업과 별목업은 부과지가 아닌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이므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해 주기 어려우므로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4

피보험자 자격관리 등(고용보험)



핵심정리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수와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 관리

■ 보험료 지원신청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불일치 처리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신청을 받은 사업장 중 신청서 상에 기재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DB상의 피보험자 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안내
 -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장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을 사업주로부터 확인하여 취득 누락자는 취득 조치하고, 미상실자는 상실 조치, 부과지 사업장 규모판단 기준과 동일

■ 이중취득자에 대한 처리

-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중 이중취득자로 조회된 자에 대해서는 확인·처리



핵심정리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는 사용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그 골간
 - － 따라서 법인의 ‘임원’, ‘감사’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가입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A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그 밖에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인가요?

A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그 밖에 임원도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인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나(일반적), 위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인가요?

A 명칭(직함, 호칭)에 관계없이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정리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3개월 경과 시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Q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연령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간 15시간 미만)자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이 경우에도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A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거주자격이 없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당연가입: F-2(국내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상호주의: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대상 시 당연가입
- 임의가입: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기타의 체류자격(C-4, E-1~10, F-4, H-2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 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27. 거 주(F-2)	○(강제)
12. 산업연수(D-3)	×	28. 동 반(F-3)	×
13. 일반연수(D-4)	×	28의2. 재외동포(F-4)	△(임의)
14. 취 재(D-5)	×	28의3. 영 주(F-5)	○(강제)
15. 종 교(D-6)	×	28의4. 결혼이민(F-6)	○(강제)
16. 주 재(D-7)	★(상호주의)	29. 기 타(G-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18-2. 구직(D-10)	×		

① ○ : 의무적으로 가입

② × : 적용제외

③ △ :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E-9, H-2 의 경우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④ ★(상호주의)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적용 확대

■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 사업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시기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사업을 적용받기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핵심정리

■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 일일 단위 근로 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요령이 있나요?(아래 표 참조)

A

근로계약		실 고용기간	일용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월 미만	○
		1월 이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월 이상	1월 미만	×
		1월 이상	×
	1일 단위	1월 미만	○
		1월 이상	○
	1월 미만	1월 미만	○
		1월 이상	○



핵심정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 (신고주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고
 -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 (권리보호)
- (신고종류) 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②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③ 피보험자 전근 신고 ④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이름, 주민번호 등)
- (신고방법) 창구, 우편, 팩스, 전자적 방법 모두 가능



Q 근로자를 고용하면 언제까지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퇴직(해고)하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신고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http://4insure.or.kr>)
- ②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 ③ 사회보험 EDI (<http://bips.bizmeka.com>)



Q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로운데 어떻게 하면 손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A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시면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납부 등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세무 전문가, 각종 협회 등 전국 약 4,5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특히,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인근의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를 활용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업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왜 복잡하게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써 상용·임시근로자의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에 갈음(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불필요)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급여 기초임금일액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들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취득조치 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고용센터에 부과 의뢰하여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Q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핵심정리

□ 기타

-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처리
 -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 : 상용 취득
 - 상용과 자영업자 동시 고용 : 상용 취득(이중취득 가능)
 - 일용과 자영업자 동시 고용 : 둘 중에 선택
 - 그 밖의 경우
 - ①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③ 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Q 동거친족과 같이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A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들 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할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의 이직일과 상실일은 일자가 같나요?

A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예시) 이직일이 11월 30일인 경우, 상실일은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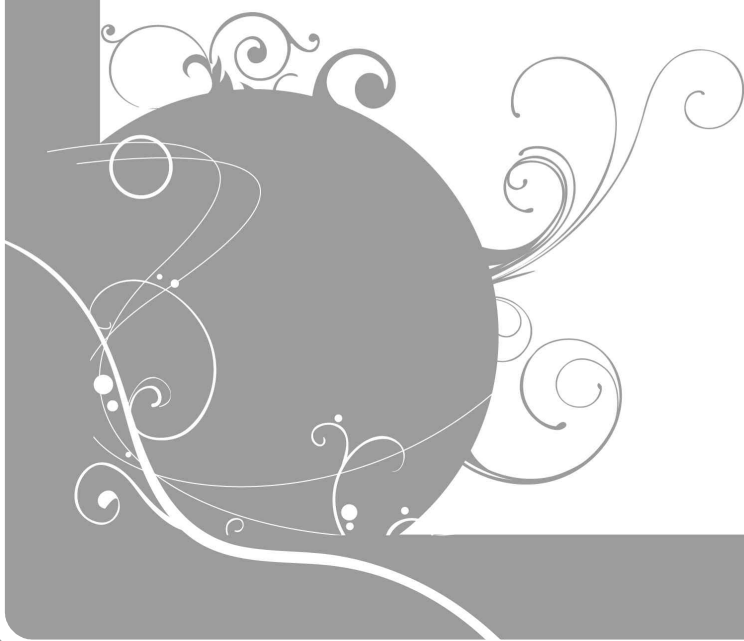


Q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실업급여 지급, 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의 적용,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고용보험료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Ⅲ. 사회보험 가입확대



1

가입확대사업 개요

1. 개 요

-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근로자 유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선확인 및 현장(출장)방문을 통해 근로자 유무를 확인하고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미가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사업

2. 목 적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한 사회보험가입을 유도, 사회적 위험(장애, 사망, 노령으로 소득능력상실 또는 감소, 실업 등) 발생 시 본인과 그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

3. 추진 대상

- 사업자등록자 중 국민연금·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 미가입사업장 유형별 분류
 - 공적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미적용 사업자등록자를 최대한 유형화하고, 업무 추진 여력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① 공적자료상 근로자 고용이력 있는 사업장
 - 국세청,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자료 등을 활용 가입확인대상 사업장으로 발굴되었으나 미가입된 사업장
 -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사업장
 - “근로자 0” 사유로 국민연금·고용보험 탈퇴 사업장
- ② 사업소득자료 있는 사업장
 -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상 사업소득금액이 확인된 사업장
- ③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신고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
- ④ 근로감독관 근로감독 연계를 통하여 발굴한 사업장

2

상담 유의사항 및 확인요령

1. 전화·출장 상담 시 유의사항

■ 기본사항

- 상담자는 사전에 4대 사회보험 업무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 고객들에게 연금제도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제도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설득

※ 심도있는 사전교육(제도, 자격, 급여 등) 필수(전문성강화)

☞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 및 신뢰 제고에 기여

■ (유선)전화 상담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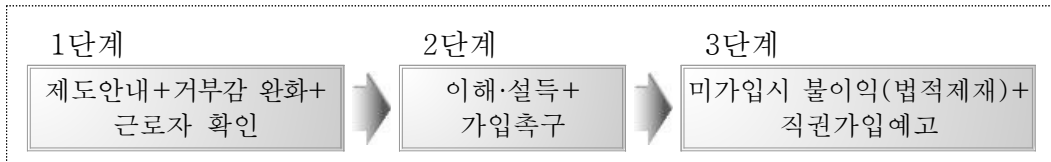
- 상대방의 신분(본인 또는 근로자)을 확인하여 안내의 범위를 결정
- 친절한 자세로 업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의 궁금증은 명쾌하게 답변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업무처리
-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상담하고, 상담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전산등록) 하여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도모
- 중복하여 독려할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 출장(방문) 상담 시 유의사항

- 가급적 사전 면담 약속 후 방문
- 출장업무 수행 시 반드시 『신분증』 패용
- 본인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분명히 밝힌 후 상담 시작
-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업무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자발적인 협조 유도

- 고객의 동의를 얻어 업무를 처리하고 일방적인 업무처리 지양

2. 전화·출장 상담 시 확인요령



- ★ 유선 통화 시 적용제외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절차 상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사용주에게 주지시키고 양해를 구함
 - 향후 출장(방문) 시 민원불만 최소화

□ 전화 확인 (전 사업장)

- 전화 기본예절 : 자기소개, 첫인사, 끝인사 등
- 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및 사업체 현황 등 파악
 - 사업체 현황 파악
 - 영업유무, 업종, 영업시간, 영업장 소재지, 사용자, 전화팩스번호, 근로자 유무, 4대보험(국민연금 등) 가입현황
- 실태조사 대상 여부 파악
 -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입 안내 및 자진신고 의사 파악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가 있어도 자진신고 의사가 없는 경우 현지 실태조사 예정(방문) 안내
 - ※ 근로자는 없으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 신고 안내(붙임 5 참조)
- 전화내용 기록 관리 (명부 및 상담내용 전산 등록)

□ 실태(출장)조사

- 대상
 - 1차 전화 확인 결과 근로자가 없거나
 - 근로자가 있어도 자진신고 지연 및 기피하는 사업장
 - 기타 휴폐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업장

● 현지 확인 요령

- 신분(명함 전달)을 밝히고 방문 목적을 설명
 - 보험료 지원제도 홍보물 전달 등
- 전화로 사전 파악한 사업장 현황 재확인
-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 근로자가 없는 경우 종료
-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입대상 여부(국민연금, 고용보험) 확인 및 근로자 인적사항 파악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을 명확히 주지시키고 자진신고 안내(신고서 등 배부)
- 실태조사서 작성, 제출 후 종료
- 가입대상 신고 여부 등 사후관리

3

맞춤형 안내 기법

1. 사업장 유형별 맞춤형 안내

개
요

➡ 사업장별 사전조사

업종별 특색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업장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사전에 조사해야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일반사업장(건설·제조업 등)

- ✓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으나,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낮다.
- ✓ 사업주의 출장과 미팅이 자주 있기 때문에 방문 시 사전안내와 미팅 약속이 필요하다.
- ✓ 사회보험료 지원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 ☞ 대부분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정부의 간섭과 제재가 따를 것이라 생각함
- ✓ 향후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향성을 설명하여 일시적 지원이 아님을 주지시켜야 한다.

서비스업(배달·요식업 등)

- ✓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업무와 피로로 인해, 대부분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와 상담을 거부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여유 있는 시간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 가급적 압축적이고 빠른 안내로 상담 시의 지루함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 ✓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 근로자의 잦은 퇴사 → 사회보험의 가입 → 장기 근무시 실업급여 발생 + 직업훈련의 기회제공 → 1년 이상의 장기근무 유도
- ✓ 사회보험의 지원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감을 설명해야 한다.
 - 사용자부담 보험료도 지원됨을 강조 - “국민연금 부담률 4.5%, 고용보험 부담률 1.15%”의 일부지원(신규가입근로자 80%)

전문직(병원·세무사 등)

- ✔ 대표자와의 상담에 앞서 지원대상 근로자와의 사전 상담을 갖고 근로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 ☞ 대표자와 전화 연결이 쉬워지고, 상담 후에 해당 근로자가 대표자에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음
- ✔ 대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 ☞ 정치적 목적이 아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보험료 가입확대를 위한 목적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 ✔ 대표자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 ☞ 월별 지원금은 적어 보이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임을 강조

2.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실제

개요

➡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중에서 특히 취약지역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및 보험료 지원 안내”를 제공한다.

상담 스크립트(사전약속)

고객
(근로자)

여보세요.

상담

안녕하세요, ○○공단 ○○지사 ○○○입니다. 상호명 ○○○○ 맞습니까?

고객
(근로자)

네, 맞습니다.

상담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안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표님과 통화 가능합니다.

고객
(근로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객
(사용자)

여보세요.

상담

○○공단 ○○지사 ○○○입니다. 현재 근로자 분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고객
(사용자)

사회보험이 의무가입인가요?

상담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객
(사용자)

그런데 저희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입하기 힘듭니다.

상담

당장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대비와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표님의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사용자)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뭐죠?

상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 2025년 기준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에 해당하시는 근로자분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신규가입근로자 80%)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부담금도 지원해 드립니다.

고객
(사용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

네,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직일지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가입대상(일용근로자는 시간에 상관없음)이고, 산재보험은 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가입대상임

고객
(사용자)

아, 그렇군요.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담

대표님 편하신 시간에 제가 방문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고객
(사용자)

그럼 내일 오후 1시 경에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상담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반 사업장

상담

(사원증을 보여주며)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렸던 ○○공단 ○○지사○○○입니다.

고객
(사용자)

안녕하세요. ○○○입니다. 여기에 앉으세요.

상담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안내서 펴고 사용주에게 보여주며) 지금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

근로자 8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용자)

지원기준이 그게 다 인가요?

상담

몇 가지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거나, 재산 및 종합소득이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지원을,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담

여기 근무하시는 ○○○씨와 ○○○씨가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요?

고객
(사용자)

예, 그렇죠!

상담

여기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접수하겠습니다.

고객
(사용자)

그런데 이거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가요?

상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고객
(사용자)

귀찮게 세무조사를 나온다는지.....

상담

이 제도는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가입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고객
(사용자)

아, 그리고 몇 달 지원하다가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상담

걱정마세요. 지원기준만 유지된다면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사용자)

(지원서를 건네며) 여기 있습니다.

상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회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이 서류(작성된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가 승인되어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앞으로 채용되실 분들은 지원기준에 해당 시에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사용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담 안녕히 계세요.

서비스업

상담 (사원증을 보여주며) 안녕하세요, ○○공단 ○○지사 ○○○입니다.

고객
(근로자) 어디요?

상담 ○○공단에서 왔습니다.

고객
(근로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안내 드리기를 위해 왔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고객
(근로자) 잠시만요, 사장님 ○○공단에서 나왔대요.

고객
(사용자)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여기 대표입니다.

상담 안녕하세요, ○○공단 ○○지사 ○○○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내서를 펴서 보여주며 바로 설명)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없으면서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2025년 기준)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근로자 8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는 몇 분의 근로자가 있으시죠? (가능한 압축하여 명확하게 설명)

고객
(사용자) 5명이요.

상담 그런데 그중 두 분은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네요.

고객
(사용자) 아, 글썄요. 세무사가 알아서 했을 텐데요.

상담 사장님!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에

대비하여 당연히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월 60시간(주당 15시간)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아르바이트생 또한 가입하여야 하고요.

(동거가족과 6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음)

고객
(사용자)

아, 그래요?

상담

근로자 중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분은 있으세요?

고객
(사용자)

네!

상담

그럼 여기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지사로 돌아가서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고객
(사용자)

어떻게 작성하면 되죠?

상담

여기에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기재사항을, 그 아래 란에는 피보험자 수와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적어주시고, 밑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고객
(사용자)

(작성을 마치고) 여기 있습니다.

상담

(지원신청서를 보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분들도 가입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의 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고객
(사용자)

음.....

상담

보험료 지원이 근로자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보험료의 4.5%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고 고용보험료의 1.15%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 역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기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동기부여의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고객
(사용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문 직

상담 (사원증을 보여주며) 안녕하세요, ○○공단 ○○지사 ○○○입니다.

고객 (근로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현재 1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님 계세요?(사전에 1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및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 (근로자) 제가 ○○○입니다.

상담 안녕하세요. (보험료 지원기준을 보여주며)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님이 지원 기준에 해당되어(기준을 말로 설명하지 말고 눈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뵈 수 있을까요?

고객 (근로자) 잠시만요!

상담 네.

고객 (근로자) (대표의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들어가세요!

상담 안녕하세요! ○○공단 ○○지사 ○○○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고객 (사용자) 아, 네.....여기에 앉으세요!

상담 201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안내서를 받아 보셨는지요?

고객 (사용자) 받아는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겁니까? 나중에 보험료 더 걷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소득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객
(사용자)

난 또 선거도 있고 선심성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했죠.

상담

아닙니다. 이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고객
(사용자)

그래요!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상담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서를 사업주에게 보여주며) 이 제도는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으면서,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근로자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곳에도 ○○○님이 해당되시더군요. 여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제가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고객
(사용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겨우 3~4만원! 그거 조금 지원받자고 번거롭게 신청하고, 나중에는 괜히 골치만 아파지는 거 아닌가요?

상담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기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1개월은 3만원 정도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30~40만원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큰돈이죠! 그리고 지원을 받으신다고 해서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
(사용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며) 이거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상담

일단 심사를 거칩니다. 신청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완납한 것을 확인 후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는 납기내 완납하셔야 함에 유의하세요.

고객
(사용자)

여기 있습니다.

상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근로자 분을 고용하시면 사회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이 서류(작성된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가 승인되어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앞으로 채용되실 분들은 지원기준에 해당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사용자)

알겠습니다.

상담 그럼 안녕히 계세요.

4

사업장 가입유도

개
요

➔ 지원제도를 활용한 사업장가입 유도

- 사업자등록자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필요
- 사업장으로 전환시 사용주 건강보험료 경감을 통한 사업장 가입 유도

상담 스크립트(국민연금)

고객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하려는데요?

상담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객님의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여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 사업자등록번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등록번호 알려드리면 안 되나요?

상담 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000000-00000000입니다.

상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고객님의께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자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상황이군요. 안타깝게도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장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고객 소득이 적으면 지역, 사업장가입자 구분없이 지원을 해줘야지 사업장가입자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네요.

상담 예, 고객님의 말씀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고객님의께서도 어려우시나, 사업장가입자 중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자,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 지역가입자도 어려운 사람 많으니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좋겠네요.

상담 사업을 운영하시려면 직원이 있지 않나요?

고객 그건 왜 묻지요? 사업이라야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잠깐씩 일해주는 분 2명 있습니다.

상담 예, 그러시군요. 잠깐 일해주는 분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이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 포함하여 사업장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일일 3시간, 주당 15시간)미만의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자 등)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사용주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객 물론, 저도 직원들 가입시켜주고 싶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혹시, 고객님께 도움이 될까 여쭙어 보는 건데, 직원 월급은 어느 정도이고 고객님 지역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납부하시나요?

고객 직원 월급은 월 60만원이고, 지역건강보험료는 월 2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 그러시군요. 직원 포함하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신규가입근로자 80%)을 받을 수 있고, 고객님의 경우 소득(사업소득 등)이 낮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지 않겠네요. 건강 보험료(지역, 직장) 부과체계(기준) 상 직장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대상 이시고, 직원분들 건강보험료 절반씩 부담해주는 것을 감안해도 사업장 전환 시 고객님께 금전적으로 부담액이 늘지 않는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고객 상세한 설명은 고마우나, 직원들도 적은 월급으로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담 직원분들도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당장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근로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여도 급여혜택은 동일합니다. 다행히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므로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게 경감되오니, 법으로 의무가입 대상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 위험(장애, 사망, 노령으로 소득능력 상실 또는 감소, 실업 등)에 노출 되었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이 안정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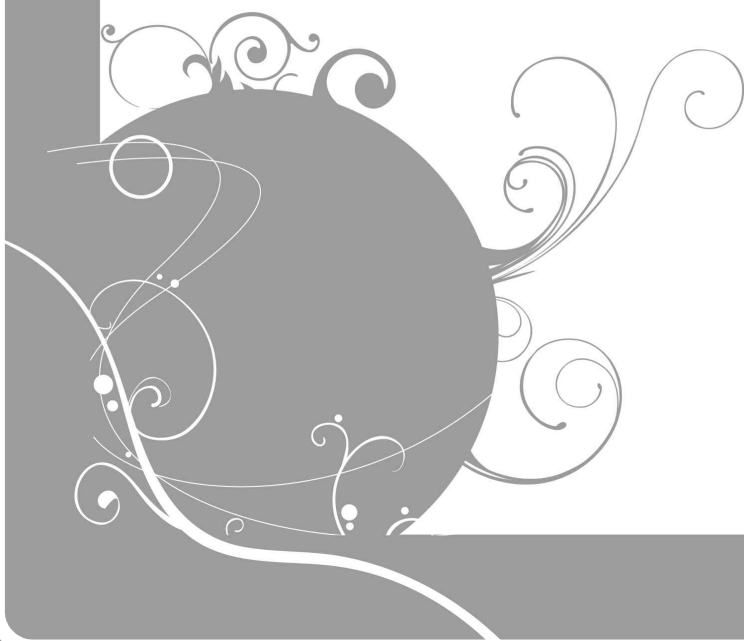
고객

직원들 설득시켜서 가입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직접방문(찾아가는 서비스)하여
설명드릴 수도 있으니 전화주시기 바라며,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붙임자료



붙임 1 신청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7. 1.>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근로자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고용보험(건설업, 별목업)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명			

건설업·별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사용자·사업주·근로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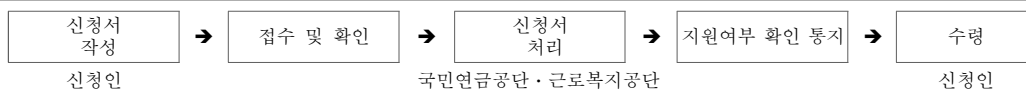
유의사항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민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적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및 월평균보수수를 적으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3.15.>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장) ☐제외 (근로자) ☐제외 ☐재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	
		하수급인 명칭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사업장 지원 제외	지원제외 사유	제외 신청월
	☐ 사업장의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사유 발생월 [년 월]
	☐ 그 외 사유	지원 제외월 [년 월]

근로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성명	생년월일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제외사유	지원 제외월	
					시작월	종료월

근로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성명	생년월일	재지원 신청월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센터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제출(첨부) 서류	110% 초과 사유로 지원 제외 및 재지원 신청 시 임금대장 사본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 여부 2.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의 보수가 고시기준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사회적 기업 등)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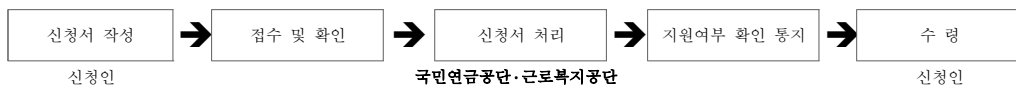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보험료 지원받는 사업 중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사업은 4개월이 되는 달부터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업은 반드시 공단에 지원 제외 신청하여야 합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주 지원금에 한함)
2. 신규입사한 근로자 또는 새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의 추정 월평균보수가 월평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당초 월평균보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도 중 월평균보수 인하신고로 지원받은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해당연도 월평상한액 이상이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환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만 해당)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6.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는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주 지원금에 한함)
7. 다음 연도에 보험료 지원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주 지원금에 한함)
8.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국번없이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다른 법령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으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어 해당 기관에서 지원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연금(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할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만 해당)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만 해당)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 한 경우 반드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연금(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근로자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만 해당)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만 해당)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횡령 등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보험료지원 제외사유는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가입 대상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 「사유발생월」란에는 근로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이상이 된 3번째 월을 기재합니다.
3. 「근로자(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제외」란에서 “110% 초과”사유는 신규입사한 근로자(또는 새로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 중 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의 보수 변동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4. 「근로자(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제외」란에서 “그 외”사유인 경우에는 “지원제외월”란에 소급 제외 신청하는 경우 최초 월을 기재합니다. “종료월”은 국민연금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제외 됩니다. 지원을 받은 이후 소급 제외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재지원」란에서 재지원 신청월은 당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소급 지원 불가)
6.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전자고지 신청	※ 고용·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있음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서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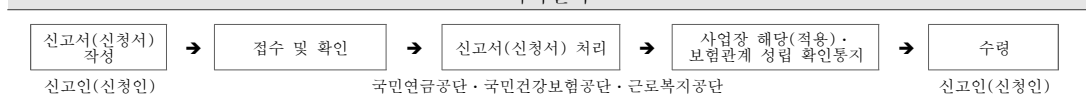
유의사항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주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민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별목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업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면히 적용받게 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회말일"에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더하고,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면 포함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3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4쪽의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1.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처리절차



(4쪽 중 3쪽)

공동대표자 현황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번호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4쪽)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개정 2018. 5. 8.>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별목업 []고용보험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사업장관리번호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있음 []없음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사	명칭	사업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지	팩스번호				
현장 (건설공사 및 별목작업)	현장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구분		[]도급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면허번호		계 약 일		년 월 일	
	건축허가(신고)번호		계약서상 착공일		년 월 일	
	총공사 금액	계약금액 (부가세 제외)	원	실제 착공일	년 월 일	
		재료 시가환산액	원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합계액	원	별목재적량	m ³	
		발주공사 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별목 상시근로자수	명	
		발주자 성명	발주자 연락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가입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년	월	일
			산재보험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뒷면)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건설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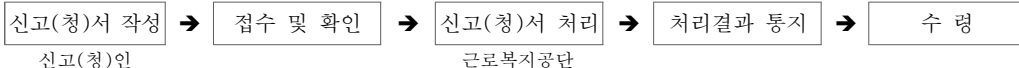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별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분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를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건설업 및 별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히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별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승인신청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일괄적용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	-----	----------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본사 사업장	상호·법인명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종류	(주생산물명·제공되는 서비스명:)	
	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	
	주된(본사)사업우편물 수령지		

건설업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공사현장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공사금액	
일반사업	사업장관리번호	지점·지사·공장명	소재지	사업종류
일괄적용 현황	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 성립일(일괄적용)			고용업종코드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산재업종코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각 1부(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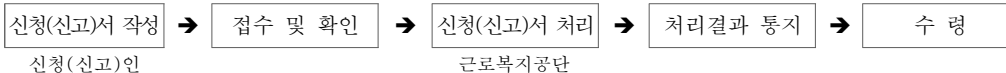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 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지사·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란에는 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습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다(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 상시근로자 수 및 총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2. 31.>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 개시 []사업 종료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일괄적용 사업	명칭	대표자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전화번호
건설공사 개시	공사명	
	총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발주공사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해당 []비해당
	발주자명	공제가입번호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별목작업 개시	별목 현장명	전화번호
	현장 소재지	
	별목 재적량	별목기간
	인원	발주자명
지점·지사· 공장 등 개시	지점·지사·공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사업 종료	개시번호	
	명칭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별목허가서 사본 1부(별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별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에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벌목작업 또는 일반사업의 지점 등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장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신고서 작성 요령

1. 성립신고서 작성요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1.>

국민연금 []당면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계좌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②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③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자고지 신청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화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고용·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방법 []전자우편 []휴대전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① 사업장명칭 -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칭 기재
사업장 형태 - 법인/개인 선택사항 "[]"에 체크
소재지 - 사업장이 실제 소재하는 지번 기재
우편물수령지 - 각 공단에서 우편물 발송에 따른 수령을 할 수 있는 지번 기재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해당 사업장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업태/종목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기재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상의 번호 기재
- ② 사용자 성명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 자택 전화번호 기재
주소 - 대표자의 실제 거주주소 기재
- ③ 보험료 자동이체신청시 대표자명의의 주거래은행계좌가입
은행명 -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 주거래은행계좌
예금주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④ 연금(고용) 보험료지원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④ 지원신청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각 해당사항에 체크

⑤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⑥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⑦ 고용보험	[] 근로자 종사 사업장(장)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수	성립 일
	[] 예술인 종사 사업(장)	예술인 수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 (사업 명칭: ~) (사업 기간: ~)	성립 일
	보험사무대행기 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우선지원대상기 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⑧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 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⑨

년 월 일

신고인 · 신청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 · 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⑤ 국민연금

근로자수 - 해당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수 - 해당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국민연금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수

⑥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 해당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건강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수

⑦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 해당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수

피보험자수 - 해당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수

⑧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 해당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수

사업의 형태 - 계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 여부 체크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없음 체크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이 있어서는 안됨

⑨ 신청 년, 월, 일을 반드시 기재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

2. 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요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28.>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각으 시라의 4대 시형변형의 간격척도의 또는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① 사업장명칭 -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칭 기재

소재지- 사업장이 실제 소재하는 지번 기재

전화번호, 이동전화, 팩스번호 - 해당 사업장의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구분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③ 대표자 여부 체류 자격	월 소득액 (소득금액 · 보수월액 · 월 평균보수) (원)	자격 취득일 (YYYY-MM-DD)	④ 국민연금			⑤ 건강보험			⑥ 고용보험 · 산재보험				
						자격 취득부호	특수직무부호	직역금부호	자격취득부호	보험료 감면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 부호	직종명 / 부호	직 종	주 소 정 기 간	계약종연월(계약직만작성)	비고
												후 호				
A			[]에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날짜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고용보험([])가입일자부희망	[]예 []아-노			
B			[]에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날짜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고용보험([])가입일자부희망	[]예 []아-노			
C			[]에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날짜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고용보험([])가입일자부희망	[]예 []아-노			
D			[]에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날짜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고용보험([])가입일자부희망	[]예 []아-노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⑦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②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자격취득자의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기재
 ③ 대표자 여부 - “[]에”, “[]아니오” 여부 체크 → 공동대표자, 공동사용자 확인
 ④ 국민연금
 취득월납부 희망 여부 체크
 소득월액(원)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자격취득일 - 근로자 채용일
 ⑤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여부 체크
 보수월액(원) -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총액
 자격취득일 - 근로자 채용일
 ⑥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 사항에 체크
 월평균보수(원)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자격취득일 - 근로자 채용일
 주소정근로시간 -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기입
 ⑦ 신청 년, 월, 일을 반드시 기재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①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추가발 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③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①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 성립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자의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② 가입자의 피부양자사항을 기입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③ 신청 년월일을 반드시 기재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

붙임 3 실태조사서(샘플)

미가입사업장 실태조사표

조사 번호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
대표자		연락처	전화 : 팩스 :
*조사방법	☐ 출장 ☐ 전화	조사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기타(회차)
면담자		사업주와 관계	☐ 사업주 ☐ 배우자 ☐ 동거가족 ☐ 근로자 ☐ 관리자 ☐ 사무대행자 ☐ 기타()
조사일시			
조사항목	조사결과		
사업장	*운영상태	☐ 정상 ☐ 폐업 ☐ 휴업 ☐ 기타	사업개시일
	*업종	(주생산물, 최종서비스)	
근로자 현황	*고용여부	☐ 고용 ☐ 미고용	최초고용일 (근로시간 : ~)
	*인원	전체 ____명(정규: 명, 계약: 명, 일용: 명, 시간제: 명, 기타: 명)	
대표자 반응	*가입의사	☐ 가입 ☐ 가입고려 ☐ 가입거부 ☐ 근로자 없음	
	*거부사유	☐ 사업주 반대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반대 ☐ 동거가족 운영 ☐ 근로자 없음 ☐ 잦은 입이직 ☐ 근로자 퇴사예정 ☐ 적용제외 근로자 ☐ 행정복잡 ☐ 폐업예정 ☐ 경기악화 ☐ 제도불만	
제도 안내	*안내사항	☐ 가입대상 ☐ 보험료지원 ☐ 각종 혜택 ☐ 미가입시 불이익 ☐ 미안내	
	*미안내사유	☐ 면담거부 ☐ 대표자부재 ☐ 기타()	
면담내용 (특이사항)			
*가입대상판단		☐ 가입대상 ☐ 재확인대상 ☐ 적용제외	
적용 제외 사유	국민연금	☐ 휴업 ☐ 폐업 ☐ 행불 ☐ 근로자 없음 ☐ 기가입 ☐ 가입대상근로자 없음(☐ 18세미만, ☐ 60세 이상, ☐ 일용·시간제) ☐ 기타()	
	*고용보험	☐ 휴·폐업 ☐ 행불 ☐ 기가입 ☐ 근로자 없음 ☐ 동거가족 운영 ☐ 외국인근로자만 고용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 ☐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 5명 미만 개인사업장	

조사자

 보험가입조사원
 보험가입조사원

 (인)
 (인)

확인자

(인)

붙임4 공공기관목록(인사혁신처 고시 제2024-10호, 2024.12.31., 제정)

※ 적용 기간: 2025.1.1.~6.30.

1. 한국은행	2.33 한국토지주택공사	3.30 구리도시공사
2. 공기업	2.34 한전KDN(주)	3.31 구미시설공단
2.1 (주)강원랜드	2.35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3.32 군포도시공사
2.2 (주)에스알	2.36 해양환경공단	3.33 기장군도시관리공단
2.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34 김대중컨벤션센터
2.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1 가평군시설관리공단	3.35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5 대한석탄공사	3.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36 김포도시관리공사
2.6 부산항만공사	3.3 강릉관광개발공사	3.3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7 여수광양항만공사	3.4 강북구도시관리공단	3.38 남양주도시공사
2.8 울산항만공사	3.5 강서구시설관리공단	3.39 단양관광공사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6 강원도개발공사	3.40 달성군시설관리공단
2.10 인천항만공사	3.7 화군시설관리공단	3.41 당진항만관광공사
2.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3.4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12 주택도시보증공사	3.9 경기관광공사	3.43 대구교통공사
2.13 한국가스공사	3.10 경기교통공사	3.44 대구도시개발공사
2.14 한국공항공사	3.11 경기주택도시공사	3.45 대전관광공사
2.15 한국광해광업공단	3.12 경기평택항만공사	3.4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16 한국남동발전(주)	3.13 경남개발공사	3.47 대전교통공사
2.17 한국남부발전(주)	3.14 경상북도개발공사	3.48 대전도시공사
2.18 한국도로공사	3.1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49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19 한국동서발전(주)	3.1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3.5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2.20 한국마사회	3.17 고양도시관리공사	3.51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18 과천시공사	3.52 동해시시설관리공단
2.22 한국부동산원	3.19 광명도시공사	3.53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23 한국서부발전(주)	3.20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3.54 문경관광진흥공단
2.24 한국석유공사	3.2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3.55 밀양시시설관리공단
2.25 한국수력원자력(주)	3.2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3.56 보령시시설관리공단
2.26 한국수자원공사	3.23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3.57 부산관광공사
2.27 한국전력공사	3.24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3.58 부산교통공사
2.28 한국전력기술(주)	3.25 광주도시관리공사	3.59 부산도시공사
2.29 한국조폐공사	3.26 광주환경공단	3.60 부산시설공단
2.30 한국중부발전(주)	3.27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61 부산지방공단스포윈
2.31 한국지역난방공사	3.28 구로구시설관리공단	3.62 부산환경공단
2.32 한국철도공사	3.29 구리농수산물공사	3.63 부여군시설관리공단

3.64 부천도시공사	3.98 여주도시관리공단	3.13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3.65 사천시시설관리공단	3.99 연천군시설관리공단	3.133 제주관광공사
3.66 서울교통공사	3.100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3.134 제주에너지공사
3.6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101 영양고추유통공사	3.1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68 서울시설공단	3.102 영월군시설관리공단	3.136 종로구시설관리공단
3.69 서울에너지공사	3.103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3.137 중랑구시설관리공단
3.70 서울주택도시공사	3.10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3.138 창녕군시설관리공단
3.7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3.105 용산구시설관리공단	3.139 창원레포츠파크
3.72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3.106 용인도시공사	3.140 창원시설공단
3.73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3.107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3.141 천안시설관리공단
3.74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3.10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142 청도공영사업공사
3.7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3.109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3.143 청주시시설관리공단
3.7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3.110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3.144 춘천도시공사
3.77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3.111 울산시설공단	3.145 충북개발공사
3.78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3.112 울주군시설관리공단	3.146 충주시시설관리공단
3.79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3.113 의왕도시공사	3.147 충청남도개발공사
3.80 성남도시개발공사	3.114 의정부시설관리공단	3.148 통영관광개발공사
3.8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3.115 이천시시설관리공단	3.149 파주도시관광공사
3.82 세종도시교통공사	3.116 인천관광공사	3.150 평창군시설관리공단
3.83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3.117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3.151 평택도시공사
3.84 속초시설관리공단	3.118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3.152 포천도시공사
3.85 송파구시설관리공단	3.119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3.153 포항시설관리공단
3.86 수원도시공사	3.120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3.154 하남도시공사
3.87 시흥도시공사	3.121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3.155 함안지방공사
3.88 아산시시설관리공단	3.122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3.156 함천군시설관리공단
3.89 안동시설관리공단	3.123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3.157 화성도시공사
3.90 안산도시공사	3.124 인천교통공사	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 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하는 기관·단체
3.91 안성시설관리공단	3.125 인천도시공사	4.1 (사)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3.92 안양도시공사	3.126 인천시설공단	4.2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3.93 양산시시설관리공단	3.127 인천환경공단	4.3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3.94 양주도시공사	3.128 장수한우지방공사	4.4 (사)수원시자원봉사센터
3.95 양천구시설관리공단	3.129 전남개발공사	4.5 (사)오산시자원봉사센터
3.96 양평공사	3.130 전북개발공사	4.6 (사)의령군장학회
3.97 여수시도시관리공단	3.13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4.7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4.8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4.42 (재)광주그린카진흥원	4.76 (재)봉화축제관광재단
4.9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4.43 (재)광주복지연구원	4.77 (재)부산경제진흥원
4.10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	4.44 (재)광주테크노파크	4.78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4.11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4.45 (재)광진문화재단	4.79 (재)부산디자인진흥원
4.12 (재)강동문화재단	4.46 (재)광진복지재단	4.80 (재)부산문화재단
4.13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4.47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4.81 (재)부산복지개발원
4.14 (재)강릉문화재단	4.48 (재)국립정동극장	4.82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4.15 (재)강원도경제진흥원	4.49 (재)국제기후환경센터	4.83 (재)부산연구원
4.16 (재)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	4.50 (재)군위문화관광재단	4.84 (재)부산영어방송재단
4.17 (재)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4.51 (재)군포산업진흥원	4.85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4.18 (재)강원테크노파크	4.52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4.86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4.19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4.53 (재)김해문화재단	4.87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20 (재)경기테크노파크	4.54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4.88 (재)부산테크노파크
4.21 (재)경남로봇랜드재단	4.55 (재)남해마늘연구소	4.89 (재)부천문화재단
4.22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4.56 (재)노원문화재단	4.90 (재)부천산업진흥원
4.23 (재)경남테크노파크	4.57 (재)녹색에너지연구원	4.91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4.24 (재)경북문화재단	4.58 (재)달서문화재단	4.92 (재)사천문화재단
4.25 (재)경북테크노파크	4.59 (재)달성문화재단	4.93 (재)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4.26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4.60 (재)담양군복지재단	4.94 (재)서울시립교향악단
4.27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4.61 (재)대구경북연구원	4.95 (재)서울테크노파크
4.28 (재)경상남도관광재단	4.62 (재)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4.96 (재)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4.29 (재)경상남도라사르환경재단	4.63 (재)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재단	4.97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4.30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4.64 (재)대구테크노파크	4.98 (재)서초장학재단
4.31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4.65 (재)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4.99 (재)성남산업진흥원
4.32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4.66 (재)대전과학산업진흥원	4.100 (재)수원시국제교류센터
4.33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4.67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4.101 (재)스크립스코리아향채연구원
4.34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4.68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4.102 (재)아산문화재단
4.35 (재)경주문화재단	4.69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4.103 (재)아산시청소년재단
4.36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4.70 (재)마포문화재단	4.104 (재)안산문화재단
4.37 (재)고양국제꽃박람회	4.71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4.105 (재)안산시청소년재단
4.38 (재)관악문화재단	4.72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4.106 (재)안산환경재단
4.39 (재)광명시청소년재단	4.73 (재)백운장학회	4.107 (재)안양문화예술재단
4.40 (재)광주광역시경제교육진흥원	4.74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4.108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4.41 (재)광주광역시여성가족재단	4.75 (재)보성군장학재단	4.109 (재)양구문화재단

4.110 (재)양산시복지재단	4.144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4.178 (재)포항테크노파크
4.111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145 (재)전북연구원	4.179 (재)하동녹차연구소
4.112 (재)영양축제관광재단	4.146 (재)전북테크노파크	4.180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4.113 (재)영월산업진흥원	4.147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4.181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4.114 (재)영주문화관광재단	4.148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4.182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4.115 (재)영화의전당	4.149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4.183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4.116 (재)오산문화재단	4.15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4.184 (재)한국여성수련원
4.117 (재)용인시산업진흥원	4.151 (재)제주테크노파크	4.185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4.118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4.152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4.186 (재)한국저작권보호원
4.119 (재)용인시정연구원	4.153 (재)제주한의약연구원	4.187 (재)한국전통문화전당
4.120 (재)용인시축구센터	4.154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4.188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4.121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55 (재)지역문화진흥원	4.189 (재)한국학호남진흥원
4.122 (재)울산경제진흥원	4.156 (재)진안홍삼연구소	4.190 (재)한국효문화진흥원
4.123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4.157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4.191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124 (재)울진군장학재단	4.158 (재)진주시복지재단	4.192 (재)행복북문문화재단
4.125 (재)원주문화재단	4.159 (재)천안시축구단	4.193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4.126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4.160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4.194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4.127 (재)이천시청소년재단	4.161 (재)청송문화관광재단	4.195 (재)화성산업진흥원
4.128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4.162 (재)축산환경관리원	4.196 (재)화성시사회복지재단
4.129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4.163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4.197 (재)화성시환경재단
4.130 (재)인천문화재단	4.164 (재)충남연구원	4.198 (재)화순장학회
4.131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4.165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4.199 (재)환동해산업연구원
4.132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4.166 (재)충남테크노파크	4.200 (주)엑스코
4.133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4.167 (재)충주중원문화재단	4.201 APEC기후센터
4.134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4.168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4.202 ECO융합섬유연구원
4.135 (재)전남테크노파크	4.169 (재)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4.203 IOM이민정책연구원
4.136 (재)전라남도관광재단	4.170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4.20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137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4.171 (재)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4.205 강남문화재단
4.138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4.172 (재)통영국제음악재단	4.206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4.139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4.173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4.207 강북문화재단
4.140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174 (재)평택시청소년재단	4.208 강원대학교병원
4.141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4.175 (재)포플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4.209 강원도강릉의료원
4.142 (재)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4.176 (재)포항문화재단	4.210 강원도삼척의료원
4.143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4.177 (재)포항시청소년재단	4.211 강원도속초의료원

4.212 강원도영월의료원	4.246 경상남도마산의료원	4.28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213 강원도원주의료원	4.247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4.281 국립공원공단
4.214 강원도장애인체육회	4.248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4.282 국립광주과학관
4.215 강원신용보증재단	4.249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4.28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216 강원연구원	4.250 경상북도김천의료원	4.284 국립대구과학관
4.217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4.251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4.28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4.218 강화군자원봉사센터	4.252 경상북도안동의료원	4.286 국립부산과학관
4.21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4.253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4.287 국립생태원
4.220 거제시문화예술재단	4.254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4.288 국립소방병원
4.2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255 경상북도포항의료원	4.289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4.222 게임물관리위원회	4.25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290 국립암센터
4.223 거래말근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4.257 경찰공제회	4.291 국립중앙의료원
4.224 경기대진테크노파크	4.258 계룡군문화발전재단	4.292 국립한국문학관
4.22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259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	4.293 국립항공박물관
4.226 경기도교통연수원	4.260 계양구자원봉사센터	4.294 국립해양과학관
4.227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261 고래문화재단	4.295 국립해양박물관
4.228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4.262 고양문화재단	4.296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229 경기도의료원	4.263 고양산업진흥원	4.297 국립현대무용단
4.230 경기도자원봉사센터	4.264 고양시자원봉사센터	4.298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4.231 경기도장애인체육회	4.265 고양시청소년재단	4.299 국민건강보험공단
4.232 경기도청소년수련원	4.266 공간정보품질관리원	4.300 국민연금공단
4.233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4.267 공무원연금공단	4.301 국방과학연구소
4.234 경기복지재단	4.268 과천시장애인체육회	4.302 국방기술품질원
4.235 경기신용보증재단	4.26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4.303 국방전직교육원
4.236 경기연구원	4.270 과학기술인공제회	4.304 국외소재문화재단
4.23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27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4.305 국제방송교류재단
4.238 경기콘텐츠진흥원	4.272 광주과학기술원	4.30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239 경남신용보증재단	4.273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4.30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240 경남연구원	4.274 광주신용보증재단	4.308 국토안전관리원
4.241 경북대학교병원	4.275 광주전남연구원	4.309 군인공제회
4.242 경북대학교치과병원	4.276 교정공제회	4.310 군포문화재단
4.243 경북신용보증재단	4.277 구로문화재단	4.311 근로복지공단
4.244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4.27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312 금융감독원
4.245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279 국가철도공단	4.313 기술보증기금

4.314 기초과학연구원	4.348 도로교통공단	4.382 사회복지법인송덕원
4.315 김포복지재단	4.349 도봉문화재단	4.383 새만금개발공사
4.316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4.350 독립기념관	4.384 서민금융진흥원
4.317 나주교육진흥재단	4.351 동북아역사재단	4.385 서울관광재단
4.318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4.352 동작복지재단	4.386 서울대학교
4.319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353 만수종합사회복지관	4.387 서울대학교연구소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320 남동청소년문화의집	4.354 만월종합사회복지관	4.388 서울대학교병원
4.32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4.355 목재문화진흥회	4.38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322 논현종합사회복지관	4.356 목포시의료원	4.390 서울문화재단
4.32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357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	4.391 서울산업진흥원
4.32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358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4.392 서울시복지재단
4.325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4.35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393 서울신용보증재단
4.32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360 방송문화진흥회	4.394 서울연구원
4.32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36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395 서울예술단
4.32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362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4.39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329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4.363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4.397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4.330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4.364 부산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4.398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4.331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4.365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4.399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4.332 대구신용보증재단	4.366 부산광역시의료원	4.400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4.333 대구의료원	4.367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4.401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4.334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4.368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4.402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4.335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4.369 부산대학교병원	4.40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4.336 대전디자인진흥원	4.37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4.404 성남시의료원
4.337 대전신용보증재단	4.371 부산신용보증재단	4.405 성남시청소년재단
4.338 대전테크노파크	4.37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4.406 성동문화재단
4.339 대전평생교육진흥원	4.373 사단법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407 세종시사회서비스원
4.34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4.374 사단법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	4.408 세종신용보증재단
4.3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75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409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4.342 대한법률구조공단	4.376 사단법인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4.410 세종테크노파크
4.343 대한소상공제회	4.377 사단법인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4.411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4.344 대한장애인체육회	4.378 사단법인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4.412 세종학당재단
4.345 대한적십자사	4.379 사단법인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4.413 소방산업공제조합
4.346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380 사단법인충청남도교통연수원	4.4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347 대한체육회	4.38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415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4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450 원주시시설관리공단	4.484 재단법인강원도립극단
4.417 수성문화재단	4.451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4.485 재단법인강원도일자리재단
4.418 수원시장애인체육회	4.45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486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4.419 수원시정연구원	4.453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4.487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4.420 수원시청소년재단	4.454 의정부시청소년재단	4.488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4.421 시청자미디어재단	4.45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4.489 재단법인공주문화재단
4.422 식품안전정보원	4.456 인천광역시용진군자원봉사센터	4.490 재단법인공주시한마음장학회
4.423 신용보증기금	4.457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센터	4.491 재단법인과천문화재단
4.42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458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4.492 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
4.425 신용회복위원회	4.459 인천광역시도시서관발전진흥원	4.493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4.426 아동권리보장원	4.460 인천광역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4.494 재단법인군포시청소년재단
4.427 안산시장애인체육회	4.461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4.495 재단법인김포시청소년재단
4.428 안양시청소년재단	4.462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	4.496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4.429 양천사랑복지재단	4.463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	4.497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4.430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4.464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4.498 재단법인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4.431 연수구자원봉사센터	4.465 인천광역시의료원	4.499 재단법인대구기계부품연구원
4.432 연수인재육성재단	4.466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4.500 재단법인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4.433 영상물등급위원회	4.467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4.501 재단법인밀양문화관광재단
4.434 영화진흥위원회	4.468 인천광역시화물센터	4.502 재단법인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 재단
4.435 예금보험공사	4.469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법인	4.503 재단법인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브에스
4.436 예술경영지원센터	4.470 인천대학교	4.504 재단법인속초문화관광재단
4.437 예술의전당	4.471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4.505 재단법인수원도시재단
4.438 예천군민장학회	4.472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4.506 재단법인수원컨벤션센터
4.439 오산시장애인체육회	4.473 인천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4.507 재단법인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4.44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474 인천신용보증재단	4.508 재단법인스포츠클럽센터
4.441 용인문화재단	4.475 인천중구가족센터	4.509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연구원
4.442 용인시장학재단	4.476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4.510 재단법인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4.443 우체국금융개발원	4.477 인천테크노파크	4.511.재단법인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4.444 우체국물류지원단	4.478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4.512 재단법인영덕문화관광재단
4.445 울산과학기술원	4.479 임실치즈테마파크	4.513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
4.446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4.480 재단법인가평군복지재단	4.514 재단법인울산관광재단
4.447 울산신용보증재단	4.481 재단법인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4.515 재단법인울산연구원
4.448 울산테크노파크	4.482 재단법인강원도사회서비스원	4.516 재단법인울산일자리재단
4.449 울진군의료원	4.483 재단법인강원도관광재단	4.517 재단법인울주문화재단

4.518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	4.553 재단법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588 재단법인국악방송
4.519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4.554 재단법인경기도교육연구원	4.589 재단법인금산축제공관재단
4.520 재단법인의정부시민장학회	4.555 재단법인경기도농수산진흥원	4.590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4.521 재단법인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4.556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591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4.522 재단법인인천동구장학재단	4.557 재단법인경기도여성가족재단	4.592 재단법인김포FC
4.523 재단법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4.558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4.593 재단법인김포문화재단
4.524 재단법인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4.559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4.594 재단법인김포산업진흥원
4.525 재단법인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4.560 재단법인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4.595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4.526 재단법인충량문화재단	4.561 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	4.596 재단법인나라
4.527 재단법인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4.562 재단법인경남한방향노화연구원	4.597 재단법인남도장학회
4.528 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	4.563 재단법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4.598 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4.529 재단법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4.564 재단법인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4.599 재단법인당진문화재단
4.530 재단법인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4.565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	4.600 재단법인당진시복지재단
4.531 재단법인춘천문화재단	4.566 재단법인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4.601 재단법인당진시청소년재단
4.532 재단법인충북과학기술혁신원	4.567 재단법인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4.602 재단법인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4.533 재단법인충북문화재단	4.568 재단법인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4.603 재단법인대구문화예술진흥원
4.534 재단법인충북여성재단	4.569 재단법인고성문화재단	4.604 재단법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4.535 재단법인충북연구원	4.570 재단법인고양시정연구원	4.605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4.536 재단법인충북인재양성재단	4.571 재단법인광명문화재단	4.606 재단법인대전세종연구원
4.537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4.572 재단법인광명시자원봉사센터	4.607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4.538 재단법인충북학사	4.573 재단법인광주과학기술진흥원	4.608 재단법인독도재단
4.539 재단법인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4.574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관광재단	4.609 재단법인동대문화재단
4.540 재단법인충청북도기업진흥원	4.575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4.610 재단법인동작문화재단
4.541 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단연구원	4.576 재단법인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4.611 재단법인마포복지재단
4.542 재단법인파주시청소년재단	4.577 재단법인광주디자인진흥원	4.612 재단법인명량대첩기념사업회
4.543 재단법인평택시문화재단	4.578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4.613 재단법인목포국제축구센터
4.544 재단법인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4.579 재단법인광주영어방송재단	4.614 재단법인문화엑스포
4.545 재단법인하늘드림재단	4.580 재단법인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4.615 재단법인백제문화재단
4.546 재단법인한국교과서연구재단	4.581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4.616 재단법인보령축제관광재단
4.547 재단법인강남복지재단	4.582 재단법인구미전자정보기술원	4.617 재단법인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4.548 재단법인강원디자인진흥원	4.583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4.618 재단법인부산문화회관
4.549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4.584 재단법인국립극단	4.619 재단법인부산여성가족개발원
4.550 재단법인거제시희망복지재단	4.585 재단법인국립발레단	4.620 재단법인새마을세계화재단
4.551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4.586 재단법인국립오페라단	4.621 재단법인서산문화재단
4.552 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	4.587 재단법인국립합창단	4.622 재단법인서산시복지재단

4.623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4.657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4.691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4.624 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	4.658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4.692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4.625 재단법인서울강학재단	4.659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4.693 재단법인천안문화재단
4.626 재단법인서울특별시서울미술연구원	4.660 재단법인울산문화재단	4.694 재단법인천안시복지재단
4.627 재단법인서초문화재단	4.661 재단법인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4.695 재단법인철원문화재단
4.628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	4.662 재단법인울산정보산업진흥원	4.696 재단법인청주복지재단
4.629 재단법인성남시상공화활성화재단	4.663 재단법인유네스코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4.697 재단법인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4.630 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4.664 재단법인인평문화재단	4.698 재단법인충청남도관광재단
4.631 재단법인세미원	4.665 재단법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4.699 재단법인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632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4.666 재단법인의정부문화재단	4.700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4.633 재단법인세종시문화재단	4.667 재단법인의정부시평생학습원	4.701 재단법인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4.634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4.668 재단법인이천문화재단	4.702 재단법인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4.635 재단법인송파문화재단	4.669 재단법인의산문화관광재단	4.703 재단법인태백시문화재단
4.636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4.670 재단법인인제군문화재단	4.704 재단법인평택복지재단
4.637 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	4.671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4.705 재단법인평택산업진흥원
4.638 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4.672 재단법인인천연구원	4.706 재단법인평택시국제교류재단
4.639 재단법인시흥산업진흥원	4.673 재단법인인천중구문화재단	4.707 재단법인평택시코컬푸드재단
4.640 재단법인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4.674 재단법인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4.708 재단법인평택시강학재단
4.641 재단법인시흥시인재양성재단	4.675 재단법인장보고강학회	4.709 재단법인포천문화재단
4.642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재단	4.676 재단법인전남여성가족재단	4.710 재단법인포천시교육재단
4.643 재단법인안산시인재육성재단	4.677 재단법인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4.711 재단법인포천시농업재단
4.644 재단법인안양산업진흥원	4.678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4.712 재단법인하남문화재단
4.645 재단법인안양시인재육성재단	4.679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4.713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4.646 재단법인양구군스포츠재단	4.680 재단법인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4.714 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
4.647 재단법인양양문화재단	4.681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4.715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4.648 재단법인양주시희망강학재단	4.682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회관	4.716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4.649 재단법인양천문화재단	4.683 재단법인제주여성가족연구원	4.717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부설특허정보진흥센터
4.650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4.684 재단법인제주연구원	4.718 재단법인함안군강학재단
4.651 재단법인여주세종문화재단	4.685 재단법인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4.719 재단법인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
4.652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	4.686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4.720 재단법인홍천문화재단
4.653 재단법인영동축제공광재단	4.687 재단법인제천문화재단	4.721 재단법인화성시문화재단
4.654 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4.688 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	4.722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4.655 재단법인영월문화재단	4.689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4.723 재단법인화성에프씨
4.656 재단법인완주군인재육성재단	4.690 재단법인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4.724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4.725 제단법인횡성문화재단	4.759 중앙사회서비스원	4.793 한국고용정보원
4.726 제외동포재단	4.760 증평복지재단	4.794 한국고전번역원
4.727 전남대학교병원	4.761 지방공기업평가원	4.795 한국공공조직은행
4.728 전남신용보증재단	4.762 진안군의료원	4.79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729 전라남도강진의료원	4.763 창업진흥원	4.79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730 전라남도교통연수원	4.764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4.79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4.731 전라남도순천의료원	4.765 충포화약안전기술협회	4.79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4.732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4.766 축산물품질평가원	4.800 한국과학기술원
4.733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4.767 춘천시장장애인체육회	4.801 한국과학창의재단
4.734 전라북도군산의료원	4.768 충남대학교병원	4.802 한국관광공사
4.735 전라북도남원의료원	4.769 충남문화재단	4.803 한국광기술원
4.736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4.770 충남신용보증재단	4.804 한국교육방송공사
4.737 전략물자관리원	4.771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4.80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4.738 전북대학교병원	4.772 충북대학교병원	4.8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739 전북신용보증재단	4.773 충북신용보증재단	4.807 한국교직원공제회
4.74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4.774 충청남도경제진흥원	4.808 한국교통안전공단
4.741 전쟁기념사업회	4.775 충청남도공주의료원	4.809 한국국방연구원
4.742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776 충청남도서산의료원	4.810 한국국제교류재단
4.743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4.777 충청남도천안의료원	4.81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74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4.778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4.812 한국국제협력단
4.74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779 충청남도홍성의료원	4.813 한국국토정보공사
4.746 정부법무공단	4.780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4.814 한국국학진흥원
4.747 제주4.3평화재단	4.781 충청북도청주의료원	4.81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748 제주대학교병원	4.782 충청북도충주의료원	4.816 한국나노기술원
4.749 제주신용보증재단	4.783 태권도진흥재단	4.8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750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4.784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4.8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75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4.785 학교법인한국폴리텍	4.819 한국농어촌공사
4.75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4.786 학교안전공제중앙회	4.82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4.75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787 한국119청소년단	4.8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75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788 한국가스안전공사	4.82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4.755 중소기업은행	4.78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823 한국도평방지위원회
4.756 중소기업중앙회	4.79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4.824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4.75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4.79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825 한국디자인진흥원
4.75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79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82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82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861 한국산업인력공단	4.89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828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862 한국생산성본부	4.896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4.829 한국무역보험공사	4.863 한국석유관리원	4.89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830 한국문학번역원	4.86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4.89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8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865 한국섬진흥원	4.899 한국인터넷진흥원
4.8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866 한국세라믹기술원	4.900 한국입업진흥원
4.8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86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901 한국자산관리공사
4.83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4.868 한국소방시설협회	4.90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835 한국문화재단	4.869 한국소방안전원	4.903 한국잡월드
4.836 한국문화정보원	4.870 한국소비자원	4.904 한국장기조직기증원
4.837 한국발명진흥회	4.87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905 한국장애인개발원
4.838 한국방사선진흥협회	4.872 한국수산자원공단	4.9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839 한국방송공사	4.873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4.907 한국장학재단
4.8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874 한국수출입은행	4.908 한국재정정보원
4.841 한국법령정보원	4.87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909 한국저작권위원회
4.8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87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91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4.84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87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911 한국전기안전공사
4.8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87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912 한국전력거래소
4.84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879 한국어촌어항공단	4.913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4.8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880 한국언론진흥재단	4.91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847 한국보육진흥원	4.881 한국에너지공단	4.915 한국전파진흥협회
4.84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8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916 한국정보기술연구원
4.849 한국사학진흥재단	4.883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4.91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85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88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4.91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4.85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4.88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919 한국주택금융공사
4.85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886 한국연구재단	4.9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85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887 한국영상자료원	4.921 한국지방세연구원
4.85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88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9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85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889 한국예탁결제원	4.9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85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89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4.92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8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89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92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858 한국산업단지공단	4.89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92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8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893 한국원자력의학원	4.9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60 한국산업은행	4.8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92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92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8 (재)5.18기념재단	5.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930 한국콘텐츠진흥원	5.9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5.43 농협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
4.93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5.10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5.44 누림홈
4.932 한국투자공사	5.11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5.45 대구광역시체육회
4.93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5.12 (재)국제결핵연구소	5.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93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5.13 (재)목포문화재단	5.47 대전광역시체육회
4.935 한국학중앙연구원	5.14 (재)웅진군인재육성재단	5.48 대한결핵협회
4.936 한국한의약진흥원	5.15 (재)인천광역시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5.49 대한노인회
4.937 한국항로표지기술원	5.16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5.50 대한민국제향군인회
4.93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17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5.51 대한에이즈예방협회
4.93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18 (재)진주문화예술재단	5.52 동해시체육회
4.94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19 (재)카이텍시설관리단	5.53 미래과학기술지주(주)
4.941 한국해양재단	5.20 (주)백스코	5.54 밀알재활원
4.942 한국해양조사협회	5.21 (주)에스비씨인증원	5.55 보람근로원
4.943 한국해양진흥공사	5.22 (주)에트리홀딩스	5.56 부산광역시체육회
4.944 한국해운조합	5.23 (주)인천투자펀드2	5.57 부천해림요양원
4.945 한국환경공단	5.24 (주)중소기업유통센터	5.58 부천해림원
4.9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25 ICT폴리텍대학	5.59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4.947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5.26 가평군체육회	5.60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
4.948 한식진흥원	5.27 강원도체육회	5.61 사단법인고양컨벤션뷰로
4.949 한아프리카재단	5.28 강원재활원	5.62 사단법인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4.950 항공안전기술원	5.29 거창군체육회	5.63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4.95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30 건축공간연구원	5.64 사회복지법인 삼다
4.952 해외건설협회	5.31 경기도체육회	5.65 사회복지법인 신안보육원
4.95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5.3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5.66 사회복지법인현진복지재단늘푸른아동원
4.954 화천군인재육성재단	5.33 경상남도체육회	5.67 사회복지법인충북사회봉사회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5.34 경상북도체육회	5.68 사회복지법인인충북에너지보육원
5.1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5.35 고양시체육회	5.69 산림조합중앙회
5.2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5.36 과천시체육회	5.70 산업연구원
5.3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5.3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71 상록원
5.4 (사)벤처기업협회	5.38 광주광역시체육회	5.72 서울특별시체육회
5.5 (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5.39 광주시체육회	5.73 성남시체육회
5.6 (사)한국여성발명협회	5.40 국토연구원	5.74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5.7 (사)한국잡지협회	5.41 노사발전재단	5.7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76 수원시체육회	5.110 참사랑의집	5.14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77 시일건강타운	5.111 청주시체육회	5.145 한국에이즈퇴치연맹
5.78 시흥시체육회	5.112 춘천시체육회	5.14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5.79 신혜힐링타운	5.113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5.14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5.80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5.114 충청남도체육회	5.14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81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5.115 충청북도체육회	5.149 한국원자력연구원
5.82 안산시체육회	5.11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5.150 한국재료연구원
5.83 안양시체육회	5.117 통일연구원	5.151 한국전기연구원
5.84 양주시체육회	5.118 평창문화도시재단	5.15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85 언론중재위원회	5.119 평택시체육회	5.153 한국제품안전관리원
5.86 에너지경제연구원	5.120 포천시체육회	5.1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87 연수구노인복지관	5.121 포항시체육회	5.15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88 연천군체육회	5.122 하이원추추파크	5.156 한국직업능력연구원
5.89 오산시체육회	5.123 한국개발연구원	5.157 한국천문연구원
5.90 울산광역시체육회	5.1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15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91 의정부시체육회	5.12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15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92 인천광역시체육회	5.1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16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93 인천스마트시티(주)	5.127 한국과학기술지주(주)	5.161 한국표준협회
5.94 인천종합에너지(주)	5.128 한국교육개발원	5.162 한국한센복지협회
5.95 재단법인남양주시복지재단	5.1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163 한국한의학연구원
5.96 재단법인광주광역시상생일자리재단	5.130 한국교통연구원	5.16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97 재단법인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5.131 한국기계연구원	5.16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98 재단법인수원에프씨	5.13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16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5.99 재단법인오산교육재단	5.133 한국노동연구원	5.167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5.100 재단법인자동차융합기술원	5.1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168 한국행정연구원
5.101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5.135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5.16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102 재단법인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5.136 한국법제연구원	5.170 한국화학연구원
5.103 전라남도체육회	5.13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5.171 한국환경연구원
5.104 전라북도체육회	5.138 한국벤처투자(주)	5.172 합천유통(주)
5.105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5.1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173 해맑은마음터
5.106 (주)경남무역	5.14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5.174 현양원
5.107 주식회사 킨텍스	5.14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175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5.108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5.1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176 홈에버그린
5.109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5.143 한국식품연구원	5.177 홍천군체육회

5.178 화성시체육회	6.33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	8.8 한전원자력연료(주)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6.34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변동일: 2025.1.1.
6.1 (주)부산항보안공사	6.35 한국잡월드파트너즈주식회사	
6.2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6.36 항공보안파트너스(주)	
6.3 (주)서울메트로환경	7. 업무위탁/대행	
6.4 (주)인천글로벌빌리티	7.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6.5 (주)제인스	7.2 (주)한국거래소	
6.6 KAC공항서비스	7.3 건설근로자공제회	
6.7 김포골드라인운영(주)	7.4 건설기술교육원	
6.8 남부공항서비스(주)	7.5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9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7.6 대한건설협회	
6.10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식회사	7.7 사단법인대한전문건설협회	
6.11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7.8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6.12 서해철도(주)	7.9 인구보건복지협회	
6.13 알이비파트너주식회사	7.10 재단법인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6.14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주식회사	7.11 전국재해구호협회	
6.15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	7.12 (주)대구메트로환경	
6.16 울산항만관리	7.1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6.17 유니스트기술지주(주)	7.14 한국상하수도협회	
6.18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	7.15 한국선급	
6.19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주식회사	7.16 한국전기공사협회	
6.20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7.1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6.21 인천메트로서비스주식회사	7.18 한국증권금융(주)	
6.22 인천항보안공사	7.19 한국창업보육협회	
6.23 제이디씨에래리조트 주식회사	7.20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6.24 제이디씨파트너스(주)	7.21 환경보건협회	
6.25 제이엔시설관리(주)	8. 기타 공공기관	
6.26 주식회사 엘에이치사육관리	8.1 88관광개발(주)	
6.27 주택관리공단(주)	8.2 재단법인국제원산지정보원	
6.28 코레일관광개발(주)	8.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29 코레일네트웍스(주)	8.4 주식회사공영홈쇼핑	
6.30 코레일로지스(주)	8.5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6.31 코레일유통(주)	8.6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6.32 코레일테크(주)	8.7 한전엠씨에스(주)	

붙임 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제도

1 지역가입자

□ 의무가입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지역가입대상 제외자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관리공단 임직원 포함)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지사 전화, 내방, 우편, FAX, 4대포털사이트

□ 기준소득월액 결정

●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결정

□ 연금보험료 부담

● 지역가입자 : 전액 본인 부담(9%)

사례】 지역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이 955,000원인 경우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955,000원) × 90/1,000 = 85,950원

● 사업장가입자 : 본인부담 기여금(4.5%) + 사용자부담 부담금(4.5%)

사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이 955,000원인 경우

☞ 부담금 및 기여금 : $955,000\text{원} \times 45/1,000 = 42,975\text{원}(5\text{원은 절사}) \Rightarrow 42,970\text{원}$
 $\Rightarrow \text{보험료} = \text{기여금}(42,970\text{원}) + \text{부담금}(42,970\text{원}) = 85,940\text{원}$

☞ 10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기여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신규가입근로자 80%)

■ **농어업인 국고보조지원**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최대 월 46,350원(2025년 기준)까지 국가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 **납부예외제도**

-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경제적 사유*의 지역 납부예외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생애 12개월간 월 최대 46,350원(2025년 기준)까지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사업중단·실직·휴직

2 국민연금 가입 혜택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편적인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됨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가입기간, 소득유무,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구분
- 수급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되어 1969년생 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분할연금

-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함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와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됨, 특히 장애등급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기는 하나,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환산기간(67개월)을 두어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액 변경 등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유족연금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님
-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분, 연령 또는 장애, 생계유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배우자의 경우는 신분, 생계유지 요건)

■ 반환일시금

- 가입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기여가 필요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범위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되는 혜택이 전혀 없게 되므로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제보조적·보상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보완적 제도임

붙임 6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 전직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임의가입)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③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내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나. 가입요건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갖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됨(일부 고유번호증* 허용)
 - *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고유번호증 가입 가능
- ②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보험관계 성립 및 변경

가.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가입대상 자영업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
 - ※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 가입신청서에는 보험료 및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보험관계 성립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며, 보험관계 성립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됨

나. 보험관계 변경

- 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가입 승인 후 보험관계(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

3 보험관계 소멸

가. 보험관계 소멸 사유

- ① 당연 소멸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19.1.15.부터 적용)
 - 임금근로자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희망시 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 시 자영업자 보험관계도 해지
- ② 임의 소멸
 -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가입연도 중에도 해지 가능)
 - 보험관계에 대한 공단의 소멸 결정·통지
 - ※ '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해지하여야함.

나. 보험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 이종취득을 원하지 않아 해지신청서 제출하는 경우도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4 보험료 산정

가. 보험료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보험가입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 단,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 불가
-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보수액을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됨

나. 보험료 산정방식

- 월 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0.25%)

다. 보험료 납부방식

- (부과고지 방식)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 2023년도 등급별 자영업자 월 고용보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단위: 원)

등급	기준보수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	36,400	4,550	40,950
2등급	2,080,000	41,600	5,200	46,800
3등급	2,340,000	46,800	5,850	52,650
4등급	2,600,000	52,000	6,500	58,500
5등급	2,860,000	57,200	7,150	64,350
6등급	3,120,000	62,400	7,800	70,200
7등급	3,380,000	67,600	8,450	76,050

※ 성립일이나 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 '12. 1. 21. 이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경우의 2021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월)은 2,600,000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I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기준)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 5~7등급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20%를 5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수준 : (1~2등급)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50%를 5년간 지원

(3~4등급)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5년간 지원

(5~7등급)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20%를 5년간 지원

－ 신청 및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www.sbiz.or.kr)

■ 각 지자체

지자체별 지원 대상, 지원액 상이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서울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영천시, 곡성군, 김천시, 포항시, 익산시, 노원구, 성북구

5 실업급여 지급

가.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하였을 것(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 ※ 신청 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나. 실업급여 일수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을 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가입기간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다.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 상담 및 실업 인정

붙임 7 국민연금 Q&A

1.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 산정
-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 많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2.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예,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합산 323.2만원입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4.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5.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에서는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7.09%(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근로자가 0.9%,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7.09%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의 0.9082%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 4대 보험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	3.545%	3.545%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의 2.05~2.6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0.9%	1.15% ~ 1.7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의 0.9082%	0.4541%	0.4541%

7.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8.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소득의 합이 553만원(2023.1.현재)을 기준으로 달라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9.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두 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나 그 미만이나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23년 1월 현재 553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 \times 553\text{만원} = 2,212\text{천원}$ 으로 연금보험료는 199,080원 (본인 납부금액 99,5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480+320) \times 553\text{만원} = 3,318\text{천원}$ 으로 연금보험료 298,620원(본인 납부금액 149,310원)

두 곳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의 총합이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국민연금 WEB-EDI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 WEB-EDI 서비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서비스 시스템
-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공동인증만으로 이용 가능, 인터넷 기반의 무료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 WEB-EDI서비스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서 각종 신고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WEB-EDI 제공 서비스

메뉴	해당업무	신고기관
신고서작성	4대 공통신고서(입사, 퇴사, 변경신고 등)	4대보험 공통
	연금고유 신고서(내용변경, 납부예외, 재개신고 등)	국민연금
	건설일용직신고서(기준소득월액변경, 경정신청 등)	
	파일신고(대량자료 엑셀파일신고)	
증명서신청	증명서 발급신청(국민연금 각종 증명서 12종)	국민연금
송수신문서	신고서 처리결과/ 증명서 처리결과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등 연금통지문서 19종	
커뮤니티	고객제안, 질문 있어요 등 커뮤니티 운영	

- ED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국민연금 EDI 콜센터(☎ 063-713-656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DI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원칙 및 사회보험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21개국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외국인

3.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12. 국민연금 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되어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13.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이상 또는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2018년 8월 1일 이후 착공일 기준 한 달 동안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 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7.29. 국민연금법 시행)
-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지급권을 취득한 자 (단, 공적연금연계신청자는 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단,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또는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
-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4.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면 신고: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EDI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로도 신청 가능
- 모바일 신고: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15.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예,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17.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어
-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 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기여금 개별 납부 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 원천공제확인서, 신분증 등입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19.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 －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2023년 1월 현재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신고서 및 이사회회의록, 정관 등으로 무보수를 입증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붙임 8 고용·산재보험 관련 Q&A

1. 우리 식당은 고정 근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자주 바뀌더라도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도 있으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당연적용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당연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지극히 근무시간이 짧은 자 즉 월 60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은 제외(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됩니다.

2. 우리 사업장은 본사에서 일괄하여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지사(지점)별로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산재보험은 장소별 가입이 원칙이므로 전국에 10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각각 신고를 해야 하나, 고용보험은 전국의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본사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하는 일에 따라 사업장마다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일용직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식당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바쁠 때는 자녀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및 동거친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용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부부 및 자녀(동거친족)만으로만 운영한다면 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5. 우리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인가요?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산재보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2021년부터는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6. 우리 식당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산재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나이와 무관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되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4.1.1.부터는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 65세 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에도 고용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14.1.1.부터는 실업급여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모두 부과됩니다.

7. 교회의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도 보험 가입대상인가요?

☑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종교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8. 우리 식당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주로 고용하는데 이들도 보험가입 대상인가요?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미만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9.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 가입 → 근로자 퇴사, 가족끼리 운영 → 다시 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했다 소멸했다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다하여 바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지는 않으며, 1년간의 의제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의제 가입기간 중 다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없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보험가입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신고에는 무엇이 있나요?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보험관계 소멸신고 등이 있습니다.

11. 고용·산재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 ☑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받으며, 식당(음식및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의 0.96%, 고용보험료는 보수의 2.05%(15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의 3.01%로,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합계×보험료율’로 산정합니다.
- ☞ 월 100만원 지급하는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식당의 경우 산재보험료 월 9,600원, 고용보험료 월 20,500원, 합계 월 30,100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합니다.
- ※ 22.7.1.이후 고용보험료율 2.05%(1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12.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되나요?

-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특고의 경우 사용자 특고자 각 1/2씩), 고용보험(2.05%)의 경우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1.15%(150명 미만 사업장)를 부담합니다. 2023년 1월분부터는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자: 80%, 기존가입자: ‘21년 지원중단)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13. 근로자(고용)신고는 언제 하나요?

-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 중 어느 한곳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 ☑ 산재와 고용보험의 자격관리의 차이

구 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관련근거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목 적	보험료 부과 기초자료 구축	보험급여(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자격관리
대 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전 사업장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이중취득 여부	가능	불가능(예외적 가능)

14. 사업주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하나요?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 보수총액신고는 무엇입니까?

- ☒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정산을 위해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발생한 보수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정산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만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사회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팩스, 인터넷(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 우리 식당은 근로자가 자주 바뀌고 하는 일도 바빠서 신고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도 이후 각종 신고 등을 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보험가입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여 각종 신고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우리 공단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서식은 다른가요?

- ☒ 신고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을 같이 사용합니다.

18. 근로자가 2곳에 근무하는 경우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한 곳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9.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여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20.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전 사업에 대하여 공단에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납부 체계[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사업 종류(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보험료 납부
• 전 사업(건설업 등의 사업 제외) •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 • 중소기업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해외파견(건설업 외) •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2 이후 신규가입자)	부과 고지
•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 임업 중 벌목업 • 해외파견사업(건설업) •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1 이전 기존가입자)	자진 신고

21. 고용·산재 보험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 ☒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당연가입사업장이 됩니다.

※ 적용제외 사업

산재보험	고용보험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모든 건설공사(2018.7.1. 이후 착공)는 적용대상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22. 부과고지제도란 무엇인가요?

- ☒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업구분에 따라 사업종류가 건설업(건설업본사 포함, 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인 사업장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건설업 및 벌목업은 현행과 같이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유지되며, 체납보험료(독촉 이후)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23. 부과고지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여러 가지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4. 구직(실업)급여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②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③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④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5.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연령별 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이직일 2019.10.1.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9.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 혜택은 무엇인가요?

- ☒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치유될 때까지의 요양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치유되었으나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에는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와 장해급여자의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 비용 등)를 지급하며,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를 지급하는 등 그 혜택이 많습니다.

30. 산재보험에 보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게 되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보험급여의 신청에 있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수년 동안 가게를 운영했지만 산재사고가 한 번도 없었고, 고용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가 지원된다고 하니 고용보험만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 ☒ 안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의무사항이므로 선택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만 가입을 해도 이후 공단에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성립조치 합니다.

붙임 9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1.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인정기준

기본 원칙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 불문하고 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 포함)
 -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기산일) 고용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확인 대상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근로일 수를 산정하고,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취득월의 초일로 할 수 있음
 - 단,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지 않거나, 고용된 날부터 1개월 후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결정기준

구 분	취득일	상실일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실제 고용기간, 근무일수 불문	● 최초 고용일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1개월간 근무일이 8일 미만인 경우(A) ●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B) ●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C) ※ (A), (B), (C) 모두 실제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이거나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인 월의 고용일 또는 기산일	●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종 근로일이 속하는 근로일수 산정 기간에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적용 ● 근로일 수가 8일 미만인 월의 기산일 ● 단, 근로일수 미달로 상실할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가능

2. 일용근로자 자격확인 시 유의사항

-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강화
 - 일용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의 사업장 적용의 형평성 및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업장 편입 필요성 등 안내

붙임 10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평균소득월액(A) : 2,861,091

(단위 : 원, 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1,000,000	90,000	196,870	293,200	389,720	486,250	582,780	679,310	775,830
2	1,100,000	99,000	201,760	300,790	399,820	498,840	597,870	696,900	795,930
3	1,200,000	108,000	206,860	308,380	409,910	511,440	612,970	714,490	816,020
4	1,300,000	117,000	211,950	315,980	420,010	524,030	628,060	732,090	836,110
5	1,400,000	126,000	217,040	323,570	430,100	536,630	643,150	749,680	856,210
6	1,500,000	135,000	222,140	331,170	440,190	549,220	658,250	767,270	876,300
7	1,600,000	144,000	227,230	338,760	450,290	561,810	673,340	784,870	896,400
8	1,700,000	153,000	232,330	346,350	460,380	574,410	688,430	802,460	916,490
9	1,800,000	162,000	237,420	353,950	470,470	587,000	703,530	820,060	936,580
10	1,900,000	171,000	242,510	361,540	480,570	599,590	718,620	837,650	956,680
11	2,000,000	180,000	247,610	369,130	490,660	612,190	733,720	855,240	976,770
12	2,100,000	189,000	252,700	376,730	500,760	624,780	748,810	872,840	996,860
13	2,200,000	198,000	257,790	384,320	510,850	637,380	763,900	890,430	1,016,960
14	2,300,000	207,000	262,890	391,920	520,940	649,970	779,000	908,020	1,037,050
15	2,400,000	216,000	267,980	399,510	531,040	662,560	794,090	925,620	1,057,150
16	2,500,000	225,000	273,080	407,100	541,130	675,160	809,180	943,210	1,077,240
17	2,600,000	234,000	278,170	414,700	551,220	687,750	824,280	960,810	1,097,330
18	2,700,000	243,000	283,260	422,290	561,320	700,340	839,370	978,400	1,117,430
19	2,800,000	252,000	288,360	429,880	571,410	712,940	854,470	995,990	1,137,520
20	2,900,000	261,000	293,450	437,480	581,510	725,530	869,560	1,013,590	1,157,610
21	3,000,000	270,000	298,540	445,070	591,600	738,130	884,650	1,031,180	1,177,710
22	3,100,000	279,000	303,640	452,670	601,690	750,720	899,750	1,048,770	1,197,800
23	3,200,000	288,000	308,730	460,260	611,790	763,310	914,840	1,066,370	1,217,900
24	3,300,000	297,000	313,830	467,850	621,880	775,910	929,930	1,083,960	1,237,990
25	3,400,000	306,000	318,920	475,450	631,970	788,500	945,030	1,101,560	1,258,080
26	3,500,000	315,000	324,010	483,040	642,070	801,090	960,120	1,119,150	1,278,180
27	3,600,000	324,000	329,110	490,630	652,160	813,690	975,220	1,136,740	1,298,270
28	3,700,000	333,000	334,200	498,230	662,260	826,280	990,310	1,154,340	1,318,360
29	3,800,000	342,000	339,290	505,820	672,350	838,880	1,005,400	1,171,930	1,338,460
30	3,900,000	351,000	344,390	513,420	682,440	851,470	1,020,500	1,189,520	1,358,550
31	4,000,000	360,000	349,480	521,010	692,540	864,060	1,035,590	1,207,120	1,378,650
32	4,100,000	369,000	354,580	528,600	702,630	876,660	1,050,680	1,224,710	1,398,740
33	4,200,000	378,000	359,670	536,200	712,720	889,250	1,065,780	1,242,310	1,418,830
34	4,300,000	387,000	364,760	543,790	722,820	901,840	1,080,870	1,259,900	1,438,930
35	4,400,000	396,000	369,860	551,380	732,910	914,440	1,095,970	1,277,490	1,459,020
36	4,500,000	405,000	374,950	558,980	743,010	927,030	1,111,060	1,295,090	1,479,110
37	4,600,000	414,000	380,040	566,570	753,100	939,630	1,126,150	1,312,680	1,499,210
38	4,700,000	423,000	385,140	574,170	763,190	952,220	1,141,250	1,330,270	1,519,300
39	4,800,000	432,000	390,230	581,760	773,290	964,810	1,156,340	1,347,870	1,539,400
40	4,900,000	441,000	395,330	589,350	783,380	977,410	1,171,430	1,365,460	1,559,490
41	5,000,000	450,000	400,420	596,950	793,470	990,000	1,186,530	1,383,060	1,579,580
42	5,050,000	454,500	402,970	600,740	798,520	996,300	1,194,080	1,391,850	1,589,630
43	5,100,000	459,000	405,510	604,540	803,570	1,002,590	1,201,620	1,400,650	1,599,680
44	5,200,000	468,000	410,610	612,130	813,660	1,015,190	1,216,720	1,418,240	1,619,770
45	5,300,000	477,000	415,700	619,730	823,760	1,027,780	1,231,810	1,435,840	1,639,860
46	5,400,000	486,000	420,790	627,320	833,850	1,040,380	1,246,900	1,453,430	1,659,960
47	5,500,000	495,000	425,890	634,920	843,940	1,052,970	1,262,000	1,471,020	1,680,050

1. 연금액산정 : $\{1.29 \times (A+B) \times P17/P + \dots + 1.2 \times (A+B) \times P23/P\} \times (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 전체가입월수, "P17~P23"-연도별 가입월수

2. 주민등록표상 세대별 가입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50,000원) 및 상한액(5,530,000원)은 2023.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평균소득월액(A):2,861,091

(단위 : 월, 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9%)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일시보상금 (장애4급)
1	1,000,000	90,000	410,240	328,190	246,140	11,076,500
2	1,100,000	99,000	420,860	336,690	252,510	11,363,370
3	1,200,000	108,000	431,490	345,190	258,890	11,650,250
4	1,300,000	117,000	442,110	353,690	265,260	11,937,120
5	1,400,000	126,000	452,740	362,190	271,640	12,224,000
6	1,500,000	135,000	463,360	370,690	278,010	12,510,870
7	1,600,000	144,000	473,990	379,190	284,390	12,797,750
8	1,700,000	153,000	484,610	387,690	290,760	13,084,620
9	1,800,000	162,000	495,240	396,190	297,140	13,371,500
10	1,900,000	171,000	505,860	404,690	303,510	13,658,370
11	2,000,000	180,000	516,490	413,190	309,890	13,945,250
12	2,100,000	189,000	527,110	421,690	316,260	14,232,120
13	2,200,000	198,000	537,740	430,190	322,640	14,519,000
14	2,300,000	207,000	548,360	438,690	329,010	14,805,870
15	2,400,000	216,000	558,990	447,190	335,390	15,092,750
16	2,500,000	225,000	569,610	455,690	341,760	15,379,620
17	2,600,000	234,000	580,240	464,190	348,140	15,666,500
18	2,700,000	243,000	590,860	472,690	354,510	15,953,370
19	2,800,000	252,000	601,490	481,190	360,890	16,240,250
20	2,900,000	261,000	612,110	489,690	367,260	16,527,120
21	3,000,000	270,000	622,740	498,190	373,640	16,814,000
22	3,100,000	279,000	633,360	506,690	380,010	17,100,870
23	3,200,000	288,000	643,990	515,190	386,390	17,387,750
24	3,300,000	297,000	654,610	523,690	392,760	17,674,620
25	3,400,000	306,000	665,240	532,190	399,140	17,961,500
26	3,500,000	315,000	675,860	540,690	405,510	18,248,370
27	3,600,000	324,000	686,490	549,190	411,890	18,535,250
28	3,700,000	333,000	697,110	557,690	418,260	18,822,120
29	3,800,000	342,000	707,740	566,190	424,640	19,109,000
30	3,900,000	351,000	718,360	574,690	431,010	19,395,870
31	4,000,000	360,000	728,990	583,190	437,390	19,682,750
32	4,100,000	369,000	739,610	591,690	443,760	19,969,620
33	4,200,000	378,000	750,240	600,190	450,140	20,256,500
34	4,300,000	387,000	760,860	608,690	456,510	20,543,370
35	4,400,000	396,000	771,490	617,190	462,890	20,830,250
36	4,500,000	405,000	782,110	625,690	469,260	21,117,120
37	4,600,000	414,000	792,740	634,190	475,640	21,404,000
38	4,700,000	423,000	803,360	642,690	482,010	21,690,870
39	4,800,000	432,000	813,990	651,190	488,390	21,977,750
40	4,900,000	441,000	824,610	659,690	494,760	22,264,620
41	5,000,000	450,000	835,240	668,190	501,140	22,551,500
42	5,050,000	454,500	840,550	672,440	504,330	22,694,940
43	5,100,000	459,000	845,860	676,690	507,510	22,838,370
44	5,200,000	468,000	856,490	685,190	513,890	23,125,250
45	5,300,000	477,000	867,110	693,690	520,260	23,412,120
46	5,400,000	486,000	877,740	702,190	526,640	23,699,000
47	5,500,000	495,000	888,360	710,690	533,010	23,985,870

1. 연금액산정 : $1.275(A+B)(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평균소득월액(A):2,861,091

(단위 : 월, 원)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1,000,000	90,000	164,090	239,310	314,490
2	1,100,000	99,000	168,340	246,790	324,910
3	1,200,000	108,000	172,590	254,270	335,340
4	1,300,000	117,000	176,840	261,750	345,760
5	1,400,000	126,000	181,090	269,230	356,180
6	1,500,000	135,000	185,340	276,710	366,600
7	1,600,000	144,000	189,590	284,190	377,020
8	1,700,000	153,000	193,840	291,670	387,440
9	1,800,000	162,000	198,090	299,150	397,860
10	1,900,000	171,000	202,340	306,630	408,280
11	2,000,000	180,000	206,590	314,110	418,700
12	2,100,000	189,000	210,840	321,590	429,120
13	2,200,000	198,000	215,090	329,070	439,540
14	2,300,000	207,000	219,340	336,550	449,960
15	2,400,000	216,000	223,590	344,030	460,390
16	2,500,000	225,000	227,840	351,510	470,810
17	2,600,000	234,000	232,090	358,990	481,230
18	2,700,000	243,000	236,340	366,470	491,650
19	2,800,000	252,000	240,590	373,950	502,070
20	2,900,000	261,000	244,840	381,430	512,490
21	3,000,000	270,000	249,090	388,910	522,910
22	3,100,000	279,000	253,340	396,390	533,330
23	3,200,000	288,000	257,590	403,870	543,750
24	3,300,000	297,000	261,840	411,350	554,170
25	3,400,000	306,000	266,090	418,830	564,590
26	3,500,000	315,000	270,340	426,310	575,010
27	3,600,000	324,000	274,590	433,790	585,440
28	3,700,000	333,000	278,840	441,270	595,860
29	3,800,000	342,000	283,090	448,750	606,280
30	3,900,000	351,000	287,340	456,230	616,700
31	4,000,000	360,000	291,590	463,710	627,120
32	4,100,000	369,000	295,840	471,190	637,540
33	4,200,000	378,000	300,090	478,670	647,960
34	4,300,000	387,000	304,340	486,150	658,380
35	4,400,000	396,000	308,590	493,630	668,800
36	4,500,000	405,000	312,840	501,110	679,220
37	4,600,000	414,000	317,090	508,590	689,640
38	4,700,000	423,000	321,340	516,070	700,060
39	4,800,000	432,000	325,590	523,550	710,490
40	4,900,000	441,000	329,840	531,030	720,910
41	5,000,000	450,000	334,090	538,510	731,330
42	5,050,000	454,500	336,220	542,250	736,540
43	5,100,000	459,000	338,340	545,990	741,750
44	5,200,000	468,000	342,590	553,470	752,170
45	5,300,000	477,000	346,840	560,950	762,590
46	5,400,000	486,000	351,090	568,430	773,010
47	5,500,000	495,000	355,340	575,910	783,430

- 연금액산정 : $(1.8 \times (A+B) \times P2/P + \dots + 1.2 \times (A+B) \times P23/P) \times (1 + 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2-P23"-연도별 가입월수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2023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3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9년 1월~2023년 12월(15년), 20년은 2004년 1월~2023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항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제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제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예: 실제로는 2022.7.1 이후부터 5,53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